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2007. 11

박명호 · 문예영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주세 및 주류행정체계	9
1.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	9
가. 연혁	9
나. 현행 제도	11
다. 주세의 세수 변화 추이	14
2. 우리나라의 주류행정체계	16
가. 연혁	16
나. 주류 제조업의 면허 및 관리	18
다. 주류 판매업의 면허 및 관리	19
III. OECD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	23
1. OECD국가의 주세율 체계	23
가. 맥주에 대한 주세율	23
나. 와인에 대한 주세율	30
다.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35
2. OECD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제도	39
가. 미국	39
나. 캐나다	53
다. 영국	61
라. 일본	69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76

참고문헌.....	80
부 록.....	82
1. 주류제조의 시설기준.....	82
2. 주류판매면허제도 연혁.....	89

## 표 목 차

〈표 Ⅱ-1〉 우리나라 주세율의 변화.....	10
〈표 Ⅱ-2〉 현행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	12
〈표 Ⅱ-3〉 주세 징수액과 GDP 및 국세 비중 추이.....	15
〈표 Ⅱ-4〉 연도별 주세 세수(1970~2005).....	15
〈표 Ⅱ-5〉 판매업면허의 유형 구분.....	20
〈표 Ⅱ-6〉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22
〈표 Ⅲ-1〉 OECD국가의 맥주 과세(2005년 1월 기준).....	23
〈표 Ⅲ-2〉 각국의 와인 과세(2005년 1월 기준).....	30
〈표 Ⅲ-3〉 각국의 증류주 과세(2005년 1월 기준).....	35
〈표 Ⅲ-4〉 특별세(special tax)의 세율.....	41
〈표 Ⅲ-5〉 주류에 대한 연방 개별소비세 세율.....	42
〈표 Ⅲ-6〉 각 주의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43
〈표 Ⅲ-7〉 제조시설 기준.....	46
〈표 Ⅲ-8〉 제조방법 기준.....	47
〈표 Ⅲ-9〉 제조규격 기준.....	48
〈표 Ⅲ-10〉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54
〈표 Ⅲ-11〉 영국의 주류에 대한 세율.....	62
〈표 Ⅲ-12〉 제조면허.....	63
〈표 Ⅲ-13〉 주류제조 규격기준.....	64
〈표 Ⅲ-14〉 주류 종류 · 품목과 그 정의 및 개정내용.....	71
〈표 Ⅲ-15〉 일본의 주류에 대한 세율.....	72
〈표 Ⅲ-16〉 일본의 주세법의 연혁.....	73
〈표 Ⅲ-17〉 주류도매업 면허.....	74

〈표 Ⅲ-18〉 주류소매업 면허	75
〈표 Ⅳ-1〉 주요국의 행정기관의 비교	77
〈표 Ⅳ-2〉 종가세와 종량세의 특성과 장단점 비교	78
〈부표 X-1〉 주류제조의 일반적 기준	82
〈부표 X-2〉 특정주류업	86
〈부표 X-3〉 전통주류업	88
〈부표 X-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88
〈부표 X-5〉 주류 판매면허제도 변천과정	89

## I. 서론

주류에 부과되는 조세인 주세는 1909년 연초세와 함께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약 100년간 시행된 오랜 역사를 지닌 개별소비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가·고급주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저가·저급주에는 저세율을 적용하는 주세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주세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원으로서의 주세는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1965년의 경우 국세에서 주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년 약 4.2%, 2005년에는 약 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와 관련된 주세의 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는 성명재·권오성·장근호(2003)가 지적한 것처럼 주류 소비행태가 고급화되고 고급 주종의 대중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세부담의 역진성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경향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40여년 간의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주세정책은 세수확보 및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표에 과거처럼 기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주세를 죄악세(sin tax)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는 주류의 소비가 가져오는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류 소비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속출, 음주로 인한 질병 발생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 등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주류소비의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한 재인식은 주세 과세체계 및 주류행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과세체계 현황을 비교·검토하고 이와 더불어서 각국의 주류행정체계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세체계 및 주류행정체

계를 간략히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주세체계 및 주류행정체계를 조사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주세체계 및 주류행정체계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결론을 맺는다.

## II. 우리나라의 주세 및 주류행정체계

### 1.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

#### 가. 연혁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는 1949년 10월 21일 법률 제60호로 주세법이 제정된 이래 모든 주류를 대상으로 종량세로 과세하였다. 그러나 1967년 11월 29일의 법률 개정에 의하여 주세의 과세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여 종가세로 전환하였다. 다만, 탁주·약주 및 주정의 경우는 1971년까지 종량세 체계를 유지하다가 1972년부터 주정을 제외하고는 탁주 및 약주까지 종가세 체계로 전환하였다.

1972년 이후 주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1>과 같다.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의 특이사항은 주류의 구분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주류의 분류기준을 제조원료·첨가물·제조방법 등의 기준에서 최종제품의 성질과 형상을 기준으로 재정립하여 주류 종류를 18종에서 11종으로 단순화시켰다<sup>1)</sup>. 이는 주류의 분류기준이 복잡하여 주류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2000년부터는 약주와 청주 및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를 분리시켜서 주세법상 13종으로 주류를 분류하고 있다.

세율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 중반에 정점을 이룬 이후에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1년과 2000년에 세율체계가 대폭 조정되었다. 1991년의 개정은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된 당시 유럽공동체(EC)와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위스키류의 세율을 인하하였고, 주류 분류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게 되었다. 2000년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주·위스키·

1) 11종은 주정, 탁주, 약주류(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를 말함.

브랜드 · 일반증류주 · 리큐르 등 증류주류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72%로 단일화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고급주로서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였던 맥주가 보편화됨에 따라 주세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맥주의 세율을 130%에서 115%로 인하하였다<sup>2)</sup>.

〈표 II-1〉 우리나라 주세율의 변화<sup>1)</sup>

(단위: %)

구 분	'72	'73. 2.26	'74. 1.14	'75	'91. 7	'94	'96	'97	'00	'04	'05	'06	'07
주정	49,350/kl, 알콜분 94도 초과 시 1도당 525원 가산(주정 규격: 94도)						57,000/kl, 알콜분 95도 초과시 1도당 600원 가산(주정 규격: 95도; 곡물주정 규격: 85~90도)						
<b>&lt;발효주&gt;</b>													
탁주	10	10	10	10	5	5	5	5	5	5	5	5	5
약주	60	60	60	6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청주	청주	100	100	120	120								
	합성청주	65	65	65	65	70	70	70	70	70	70	30	30
	명약주	-	80	100	100								
맥주	맥주	120	150	150	150	150	150	130	115	100	90	80	72
	합성맥주	100	100	100	100								
과실주	25	25	25	25	30	30	30	30	30	30	30	30	30
<b>&lt;증류주&gt;</b>													
증류식 소주	35	35	35	35	50	50	50	50	72	72	72	72	72
희석식 소주	35	35	35	35	35	35	35	35	72	72	72	72	72
위스키	160	160	250	200	150	120	100	100	72	72	72	72	72
브랜드	100	100	160	150	150	120	100	100	72	72	72	72	72
일반 증류주	기타증류주	50	80	80	80								
	기타양조주	100	110	110	110								
	고량주	110	110	110	110	80	80	80	80				
	기타재제주1	35	35	35	100					72	72	72	72
	기타재제주2	5	50	50	40								
	위스키류 · 브랜드류 함유	-	-	-	-	-	100	100	100				
리큐르	인삼주1	-	-	-	100	50	50	50	50	72	72	72	72
	인삼주2	-	-	-	50								

주: 1) 1991년부터 '기타주류'로 구분된 주종에 대한 세율은 생략  
 자료: 주세법 및 성명재 · 장근호(1999) p. 228을 참조 작성

2) 맥주의 세율은 1999년 12월 세법개정에서 단계적인 인하를 천명한 이후에 현재 72%로 낮아진 상태이다.

한편 주류에는 주세 이외에도 교육세 및 방위세가 부가·과세되었다. 방위세는 1975년도에 제정되어 1990년까지 탁주·주정을 제외하고 주세액의 10%로 부과되었다. 이때 주세율이 100% 이상인 주류에 대해서는 1979년까지 주세액의 20%, 그 이후 폐지될 때까지 주세액의 30%로 부과되었다. 교육세는 1982년부터 부과되어 주정, 소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 10%의 세율로 과세되었다. 1991년 이후에는 주정, 소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 중에서 주세율이 80% 이상이면 30%, 그 외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주정, 탁주, 약주를 제외한 주류 중 주세율이 70% 미만이면 10%, 70% 이상이면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나. 현행 제도

우리나라는 주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주종에 대하여는 종가세 체계로 과세하고 있다. 이때 주정<sup>3)</sup>은 일반적으로 희석식 소주 제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소주에서 종가세로 과세할 때 종량세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의 모든 주세는 종가세로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1) 과세대상 및 세율

주세법상 과세대상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된 주류가 된다. 주류는 현재 13종으로 분류되고,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종량세로 부과되는 주종을 제외한 나머지 12종에 대해서는 종가세가 적용된다. 종가세를 적용하는 주종의 경우 출고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른 주종 및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II-2>와 같다.

3)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주세법 제3조).

〈표 II-2〉 현행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

주 종	규 격	현 행 세 율
주 정	95도 이상 (곡물주정은 85~90도)	57,000원/kl(95도) (알콜분 95° 초과하는 매1도마다 600원씩 가산)
〈발효주〉 탁 주 약 주 청 주 맥 주 과실주		5% 30% 30% 72% 30% (소규모 승인제조 <sup>1)</sup> 15%)
〈증류주〉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불휘발분 2도 이상	72% 72% 72% 72% 72% 72%
〈기타주류〉 ·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 서 발효주가 아닌 것		72%
·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주류 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30%

주: 주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주세율 70% 이하의 주류는 10%(단, 주정, 탁주, 약주는 과세 제외)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

자료: 『조세개요』, 재경부, 2006

## 2) 과세표준

현행 우리나라 주세의 과세대상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과세표준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과세표준

은 제조 총원가와 제조자의 이윤이 포함된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가격이다.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조 총원가, 제조자의 이윤, 운임, 보험료,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주류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까지 포함하여 주세를 과세하고 있다.

### 3)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방법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세법 제2조에서 주류를 제조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은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주류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2월에 주류를 출고한 경우 4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류수입업자는 수입 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라 관할세관장에 신고하면 된다.

### 4) 주세의 면제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 및 수입된 주류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 보아 주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수출, 수입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 ○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

- 수출하는 것
-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 등에 판매되는 주류
- 우리나라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또는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 외국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 납품하는 것
-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 ○ 수입된 주류

-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가 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 다. 주세의 세수 변화 추이

주세의 세수 변화는 다음 <표 II-3>와 같다. 2005년 주세수입은 약 2조 6천억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0.32%, 국세 대비 비중은 2.04%에 상당하였다. GDP와 국세 대비 비중이 각각 0.8%, 6.5%이었던 1970년과 비교하면 주세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GDP 대비 비중은 연평균 3.4%씩 감소하였고, 국세 대비 비중도 연평균 4.0%씩 감소하였다. 이는 주세 세수입의 증가율이 지난 26년간 소득이나 국세 증가율보다 낮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득 대비보다는 국세 대비 비중이 조금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GDP보다 국세가 지난 26년간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II-3〉 주세 징수액과 GDP 및 국세 비중 추이

(단위: 천억원,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주세 징수액	0.2	0.8	3.0	5.0	10.2	11.4	13.3	13.7	15.5	18.2
GDP 비중	0.78	0.78	0.77	0.60	0.55	0.51	0.52	0.47	0.45	0.46
국세 비중	5.92	5.85	5.13	4.22	3.81	3.78	3.77	3.48	3.27	3.21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세 징수액	20.3	17.9	18.1	20.8	18.6	24.7	26.6	27.3	25.9	26
GDP 비중	0.46	0.36	0.37	0.39	0.34	0.4	0.39	0.38	0.33	0.32
국세 비중	3.21	2.56	2.68	2.75	2.11	2.58	2.55	2.38	2.2	2.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KOSIS 국민계정 자료.

주종별로 부과 또는 신고세액 대비 비중을 보면 2005년의 경우 맥주 48.6%, 희석식 소주 31.8%, 위스키 6.5%, 수입분 8.4%를 차지하고 있다. 소주의 경우 2000년부터 세율이 50%에서 72%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세수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년에 대비하여 맥주와 소주의 세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맥주의 경우 2007년도부터 맥주의 세율이 80%에서 72%로 과세되어 세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4〉 연도별 주세 세수(1970~2005)

(단위: 천억원, %)

구 분	징수 기준			부과/신고 기준				합계
	주세 세수	GDP비중	국세비중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수입분 <sup>1)</sup>	
1970	0.2	0.78	5.92	2.6	10.4	-	0.2	21.7
1975	0.8	0.78	5.85	18.8	43.0	-	0.7	83.9
1980	3.0	0.77	5.13	47.6	202.0	13.9	11.1	321.8
1985	5.0	0.60	4.22	80.6	334.2	33.5	15.9	516.1
1990	10.2	0.55	3.81	123.7	655.2	68.0	73.8	1,021.7
1991	11.4	0.51	3.78	128.1	799.2	68.4	77.1	1,166.3
1992	13.3	0.52	3.77	149.9	910.6	63.6	79.7	1,298.2
1993	13.7	0.47	3.48	170.8	948.0	78.2	83.9	1,372.3
1994	15.5	0.45	3.27	193.3	1,149.9	89.4	114.1	1,640.5
1995	18.2	0.46	3.21	192.2	1,283.7	102.7	168.0	1,840.4

〈표 II-4〉의 계속

구 분	징수 기준			부과/신고 기준				
	주세 세수	GDP비중	국세비중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수입분 <sup>1)</sup>	합계
1996	20.3	0.46	3.21	218.9	1,363.1	151.1	130.9	1,974.1
1997	17.9	0.36	2.56	239.5	1,302.1	148.8	159.2	1,965.2
1998	18.1	0.37	2.68	284.4	1,195.7	145.9	95.6	1,835.5
1999	20.8	0.39	2.75	329.3	1,248.2	205.6	94.6	2,004.7
2000	18.6	0.34	2.11	520.9	1,267.6	188.1	135.2	2,254.2
2001	24.7	0.40	2.58	529.6	1,164.2	214.9	175.8	2,253.4
2002	26.6	0.39	2.55	621.5	1,294.5	262.1	241.5	2,574.9
2003	27.3	0.38	2.38	706.1	1,334.4	249.3	249.3	2,611.5
2004	25.9	0.33	2.20	767.6	1,370.8	154.2	170.1	2,595.6
2005	26.0	0.32	2.04	816.3	1,247.7	166.4	216.5	2,568.7

주: 1) 수입분 신고세액은 2005과세연도부터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음  
 자료: 장근호(2005);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06, 국세청 내부자료.

## 2. 우리나라의 주류행정체계

### 가. 연혁<sup>4)</sup>

우리나라의 주류행정은 재정확보 차원에서 주류에 부과하는 주세 세수입의 관리에 초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정인이 주류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면허제도를 1949년 10월 주세법 제정시부터 채택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주류생산과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주류행정의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9년 주세법이 제정된 이후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류제조 및 판매에 대한 면허가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없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영세한 제조·판매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주류 유통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3월 국세청이 발족되자 그 동안의 면허 실태를 파악하는 등 본격적

4) 국세청(2006)과 서희열(2001)을 참조하여 작성.

으로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면허제도를 시행하였다. 동년 7월 주류업계의 문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주정 및 증류식소주 제조설비의 신설 또는 개량면허준칙」을 마련하여 생산시설을 규제하였다. 또한 동년 8월에 문란한 주류유통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주류 및 발효제의 판매면허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제도화하였다. 동년 9월에는 주세법을 개정하여 면허의 조절 및 남발 방지, 면허의 이권화, 면허권자의 재량권을 규제할 목적으로 「주류곡자 및 공국제조면허사무준칙」을 마련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는 주류제조 및 판매업 면허와 관련된 규정들의 통폐합 등을 통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1973년부터는 주류제조장 통·폐합과 신규 제조면허 금지, 1976년부터는 주류도매장 통합 및 신규 도매면허 금지를 통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면허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7년부터 부분적인 신규 제조면허의 허용과 주류판매업의 사업범위 등을 정하여 도·소매업을 분리하였으며, 제조·판매업의 보충면허, 특정판매면허 등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그 이전의 주류관리규정·주정관리규정·주류 및 발효제면허관리규정·주류유통에 관한 규정·주류업단체허가규정 등 개별 규정을 통폐합하여 주세행정체계에 대한 정비를 행하였다. 특히 1979년 10월부터 훈령 등 일제 정비 계획에 착수하여 1980년 3월에 9개 훈령을 통폐합 및 단일화함에 따라 면허규정도 「주세사무처리규정」으로 흡수되었다. 또한 1982년 2월 각종 예규를 정리하여 「주세기본통칙」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는 주류행정의 개방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이는 1980년대 말부터 불어온 자율화·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른 것이다. 1984년 7월 맥주 수입개방을 시작으로 1990년부터 1994년 말까지 위스키, 포도주 등 거의 대부분의 주류가 단계적으로 수입개방되었다. 또한 1990년 주류도매면허 개방, 1991년 제조면허의 단계적 개방, 1992년 자도소주 판매제 폐지, 1993년 약주공급구역 폐지 및 소주용 주정배정제 폐지, 1995년 살균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 및 기준제조수량 폐지, 1998년 주류제조시설기준 완화, 판매업 면허 통합<sup>5)</sup>, 1999년 주조사 의무고용제도 폐지 등의 주

5) 당시 판매업 면허는 12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6종으로 통합시켰다.

류행정 개방화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규제의 완화 조치가 취해졌다. 예를 들면 2001년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제도 신설, 2002년 주류의 알콜도수 폐지와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2004년 특정주류판매업자의 청주판매 허용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 나. 주류 제조업의 면허 및 관리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은 주종별 혹은 제조장별로 시설기준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설비, 제조방법, 주류검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조장별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배정하고 생산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종별로 판매상대방을 지정하고 직매장 설치 및 출고가격을 변경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고·제조·저장·판매에 관한 신고 및 납세증지 첨부와 주세담보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세법 제6조에 따르면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별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부록의 <부표 X-1>에서는 주종별 또는 공정별 시설과 최적용량 규모를 설정하는 제조장의 일반적 시설기준을 보여준다.

한편,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특정주류업 경우의 시설기준은 부록 <부표 X-2>와 같다. 또한,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지정 문화재에 한함)가 추천하는 주류 및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는 부록 <부표 X-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2002년 2월 1일자로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소규모 맥주 제조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영업장 안

에서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제조장과 영업장은 배관시설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부록 <부표 X-4>와 같다.

한편, 주세법 제10조에서는 시설요건 외에도 면허신청인의 법률행위능력, 세금체납, 범죄경력 등과 관련하여 면허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세법 제9조에서는 면허의 조건으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주류 판매업의 면허 및 관리

우리나라의 주류 판매업의 정부면허도 주세법, 동법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세법 제2장 제1절(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면허)<sup>6)</sup> 제8조 주류판매업(판매중 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의 면허를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주류판매업 종류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동조 제3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자의 주류의제판매업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류 판매업이란 제조장으로부터 주류 등을 출고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하며, 현재 주류 매업면허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6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국세청의 내부지침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는 11가지<sup>7)</sup>로 구분하고 있다.

판매업면허의 유형은 크게 도매업면허와 소매업면허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판매업면허의 종류는 아래의 <표 II-5>와 같다.

6) 주세법 제6조에서 제20조 규정.

7)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주정도매업면허, 주류수출입업면허(가), 주류수입업면허(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주류중개업면허(가), 주류중개업면허(나), 주류의 군납중개업면허, 주류소매업면허, 주정소매업면허.

〈표 II-5〉 판매업면허의 유형 구분

구 분	주세법 시행령 구분	구체적 내용
도매업면허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일반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를 주류제조사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는 면허
	특정주류도매업면허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를 주류제조사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는 면허
	주정도매업면허	주정만을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는 면허
	주류수출입업면허	국산주류를 수출하거나 외국산 주류를 수입하여 도매할 수 있는 면허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국산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면허 - 주류수출입업면허(나)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도매할 수 있는 면허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의 수출입만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할 수 있는 수퍼연쇄점 본·지부 등에 대한 주류 중개업 면허 - 주류중개업면허(가) 수입 또는 수출만을 중개하는 면허 - 주류중개업면허(나)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포함)을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에 중개하는 면허
소매업면허	주류소매업면허	주정 이외의 주류를 허가장소에서 소매만을 할 수 있는 면허
	의제판매업면허 <sup>1)</sup>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 확인을 하여 약식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것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 - 주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탁·약주 제외)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주: 1)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영업허가에 부수하는 면허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인정되는 면허

주류 판매업 면허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 1개소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의 임의적 거부요건<sup>8)</sup>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역에 따른 자본금 및 시설기준 등의 면허요건을 갖추어 신청서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요건은 자본금 및 시설기준 등의 면허요건과 면허신청자의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고, 신규면허의 부여도 수급조정요건으로 시·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6>과 같다.

현행 주세법 제10조에서는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주류의 제조·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세청장이 인구·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소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조 또는 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류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 및 통합공고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수출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의 절차는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선을 발굴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수취한 후 수출승인을 받아 수출물품을 확보하고 수출통관 후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거래가 종료되는 때까지 거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수출용 주류 구입시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수출하여야 하고 유통중에 있는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는 없다.

---

8)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표 II-6〉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기타지역
자본금 <sup>1)</sup>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165㎡ 이상	66㎡ 이상
자격요건	1.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2.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 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나.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무면허주류제도·판매) 및 동법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었을 것 마.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신규면허 부여방법	1. 판매의 조정상 시·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 다만, 서울특별시는 그 인접한 도시(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시 및 김포군)를 포함. 2.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도 주류출고량, 전년도 시·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전년도 주류출고량×총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주류매출액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전년도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전년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지역별기준판매수량×2 단, “1” 지역은 3배)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전년도 시·군별 인구수÷전년도 전국 인구수)÷(지역별 기준판매수량×2 단, “1” 지역은 3배) 라.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가”와 “나”를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군별 신규면허허용 업체수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수량(지역별 구분) 가. 지역(서울시 동,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 시) : 870kl 나. 지역(인구 10만 이상의 시·군) : 831kl 다. 지역(기타지역) : 747kl	

주: 1)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자료: 주세법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5】

### Ⅲ. OECD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

#### 1. OECD국가의 주세율 체계<sup>9)</sup>

##### 가. 맥주에 대한 주세율

맥주의 경우 우리나라,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회원국이 종량세로 과세하고 있다. 종량세의 과세 기준은 알콜도수 기준, 당분 기준, 100리터 기준, 1리터 기준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저알콜주, 소규모생산 등에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며, 터키는 최저한세 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Ⅲ-1〉 OECD국가의 맥주 과세(2005년 1월 기준)

국가명	100리터 · 당분1도당 (per degree Plate) 종량세율		100리터 · 알콜1도당 (per degree alc.) 종량세율		VAT 세율(%)	저알콜주 (알콜도수 2.8%이하)에 대한 100리터당 종량세율		다른 요소에 대한 과세 여부	
	각국 화폐	미국 달러	각국 화폐	미국 달러		각국 화폐	미국 달러	알콜도수 누진세율	소규모 생산에 대한 저율과세
호주	각주		각주		10.00	0.00	0.00	○	○(각주)
오스트리아	2.08	2.18			20.00			×	○
벨기에	1.71	1.80			21.00			×	○
캐나다			27.99	17.80	7.00/15.00	각주		○	×
체코공화국	24.00	0.80			22.00			×	○
덴마크	268.50	37.97			25.00	0.00	0.00	○	○
핀란드			19.45	20.42	22.00	16.80	17.64	×	○
프랑스			2.60	2.73	19.60	1.30	1.37	×	×
독일	0.79	0.83			16.00			×	○
그리스	1.13	1.19			18.00			×	×
헝가리	365.00	1.63			25.00			×	×

9) OECD(2006)를 참조 · 번역하여 작성.

〈표 III-1〉의 계속

국가명	100리터 · 당분1도당 (per degree Plate) 중량세율		100리터 · 알콜1도당 (per degree alc.) 중량세율		VAT 세율(%)	저알콜주 (알콜도수 2.8%이하)에 대한 100리터당 중량세율		다른 요소에 대한 과세여부	
	각국 화폐	미국 달러	각국 화폐	미국 달러		각국 화폐	미국 달러	알콜도수 누진세율	소규모 생산에 대한 저율과세
아이슬랜드			5,870.00	72.67	24.50	0.00	0.00	×	×
아일랜드			19.87	20.87	21.00	각주		×	×
이탈리아	1.40	1.47			20.00			×	×
일본			각주		5.00			×	×
한국	각주		각주		10.00	각주		×	×
룩셈부르크	0.79	0.83	0.00	0.00	15.00	0.79	0.83	×	○
멕시코			25%		15.00			○	×
네덜란드	2.10	2.21			19.00			○	○
뉴질랜드			각주		12.50	각주		×	×
노르웨이			각주		24.00	각주		×	×
폴란드	6.86	1.79			22.00			×	○
포르투갈					19.00	6.19	6.50	○	○
슬로바키아 공화국	30.00	0.76			20.00			×	○
스페인	각주				16.00	0.00		×	×
스웨덴			147.00	16.94	25.00/12.00	0.00	0.00	×	×
스위스	24.75	17.92	각주		7.60	각주		×	×
터키	15,900,000			9.86	18.00			×	×
영국			11.89	19.16	17.50	0.00	0.00	×	○
미국			21.00	21.00				×	○

자료: CTPA(2006)

〈호주〉

아래의 세율은 맥주의 알콜도수가 1.15% 초과시 과세한다. 1.15%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구분	알콜 함량	세율(호주달러)
48ℓ 미만의 맥주를 판매하는 개인	3% 미만	AUD 29.36/ℓ
	3%이상 ~ 3.5% 미만	AUD 34.22/ℓ
48ℓ 이상의 맥주를 판매하는 개인	3% 미만	AUD 5.86/ℓ
	3% 이상 ~ 3.5% 미만	AUD 18.41/ℓ
	3.5% 이상	AUD 24.09/ℓ

〈오스트리아〉

소규모 양조업체(연간 생산량 50,000hl 미만)는 EUR 1,24에서 EUR 1,87의 세율을 제품의 규격에 따라 적용한다.

〈벨기에〉

소규모 양조업체(연간 생산량 200,000l 미만)는 EUR 1.4873에서 EUR 1.6857의 세율을 당분(degree plato)을 기준으로 hl(100리터)당 적용하여 과세한다.

〈캐나다〉

hl(100리터)당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알콜 도수	세율(캐나다달러)
1.2% 이하	CAD 2,591/hl
1.2% 초과 ~ 2.5% 이하	CAD 13,99/hl
2.5% 초과	CAD 27,985/hl

〈덴마크〉

hl(100리터)당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분(degree plato)	세율(덴마크화폐단위)
11도 미만	DKK 268.50/hl
11도 이상 ~ 14도 미만	DKK 345.75/hl
14도 이상 ~ 18도 미만	DKK 460.75/hl
18도 이상 ~ 22도 미만	DKK 510.25/hl
22도 이상	DKK 27.00/hl

덴마크는 소규모 양조업자에게 세금을 공제해주고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리터당 DKK 58.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알콜도수 2.8% 미만의 맥주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핀란드〉

소규모 양조업자를 4단계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인하세율을 적용한다.

연간 생산량	세율
2,000hl 미만	EUR 9.73
2,000hl 이상 ~ 30,000hl 미만	EUR 13.62
30,000hl 이상 ~ 55,000hl 미만	EUR 15.56
55,000hl 이상	EUR 17.51

〈독일〉

소규모 양조업자(연간 생산량이 200,000hl 미만)의 경우에는 당분(degree Plato)에 따라 EUR 0.3935에서 EUR 0.5902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이슬랜드〉

알콜도수가 2.25%를 초과하는 맥주에 대하여 알콜도수당 ISK 5,8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본〉

hl(100리터)당 22,200엔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

한국의 세율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주류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도 같이 납부되는데, 주류세액에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룩셈부르크〉

소규모 양조업자(연간 생산량 200,000hl 미만)의 경우에는 EUR 0.40에서 EUR 0.45의 세율을 적용한다.

〈멕시코〉

모든 세율은 가격에 따라 적용한다.

가격(멕시코 화폐단위)	세율
13.5° G.L. 미만	25%
13.5° G.L. 이상~20° G.L. 미만	30%
20° G.L. 이상	50%

〈네덜란드〉

알콜도수가 0.5%인 맥주는 6%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당분의 hl(100ℓ)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리고, 당분이 11~15인 맥주의 세율은 일반적인 양조업자의 경우 EUR 25.11의 세율을 적용하나 당분이 12인 맥주의 세율은 EUR 2.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양조업자

맥주의 당분(degree plato)	세율
7 미만	EUR 5.50
7 이상 ~ 11 미만	EUR 18.84
11 이상 ~ 15 미만	EUR 25.11
15 이상	EUR 31.40

소규모 양조업자(연간 생산량 200,000 hl 미만)

맥주의 당분(degree plato)	세율
7 미만	EUR 5.50
7 이상 ~ 11 미만	EUR 17.43
11 이상 ~ 15 미만	EUR 23.23
15 이상	EUR 29.05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주류에 대한 소비세율은 알콜도수의 ℓ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콜도수	세율(뉴질랜드 화폐단위)
1.15% 미만	비과세
1.15% 이상 ~ 2.5% 미만	NZD 32,465
2.5% 이상	NZD 21,647

##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주류에 대한 소비세율은 알콜도수의 hl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콜도수	세율(뉴질랜드 화폐단위)
0.00% ~ 0.70% 미만	NOK 155
0.70% 이상 ~ 2.75% 미만	NOK 243
2.75% 이상 ~ 3.75% 미만	NOK 918
3.75% 이상 ~ 4.75% 미만	NOK 1,589
7% 이상	NOK 355

## 〈폴란드〉

폴란드의 소규모 저율과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연간 판매량	세율(폴란드 화폐단위)
연간 판매량 20,000hl 이하	20PLN/hl
연간 판매량 70,000hl 이하	10PLN/hl
연간 판매량 150,000hl 이하	8PLN/hl
연간 판매량 200,000hl 이하	6PLN/hl

## 〈포르투갈〉

일반적인 주류세율을 아래의 표와 같다. 다만, 소규모 양조업자(연간 생산량 200,000hl 미만)의 경우 정상세율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알콜도수와 당분	세율
0.5% 이상 ~ 1.2% 미만	EUR 6.19
1.2% 이상, 당분 8 미만	EUR 7.76
1.2% 이상, 당분 8 이상 ~ 11 미만	EUR 12.39
1.2% 이상, 당분 11 이상 ~ 13 미만	EUR 15.52
1.2% 이상, 당분 13 이상 ~ 15 미만	EUR 18.59
1.2% 이상, 당분 15 이상	EUR 21.75

## 〈슬로바키아 공화국〉

소규모 양조업자(연간생산량 200,000hl 미만)의 경우 당분을 기준으로 hl(100리터

당) SKK(슬로바키아 공화국 화폐단위) 23을 적용한다.

<스페인>

알콜도수가 1.2%를 초과하지 않는 맥주에 대해서 비과세

알콜도수	세율
1.2% 이상 ~ 2.8% 미만	EUR 2.32/hl
2.8% 이상, 당분 11 미만	EUR 5.34/hl
2.8% 이상, 당분 11 이상 ~ 15 미만	EUR 8.38/hl
2.8% 이상, 당분 15 이상 ~ 19 미만	EUR 11.43/hl
2.8% 이상, 당분 19 이상	EUR 0.77/당분(hl기준)

\* 북아프리카지역의 스페인령 Ceuta와 Mellila의 경우 비과세

<스웨덴>

맥주의 알콜도수가 2.8%가 넘을 때는 <표 Ⅲ-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3.5% 미만의 저알콜맥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12%이다.

<스위스>

알콜도수 0.5%에서 15.0%의 모든 맥주에 대해서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터키>

터키의 주류세는 알콜도수에 부과하지 않고 가격에 따라 63.3%의 세율을 적용한다. 만일 알콜도수와 표의 최저한 세액<sup>10)</sup>보다 적게 세금이 나온다면 이 최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영국>

알콜도수 1.2% 미만의 맥주는 비과세한다. 그리고 30,000hl(100ℓ) 이하를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업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0) 15,900,000TL(현재 터키의 화폐단위는 2005년의 화폐개혁(디노미네이션) 이후 2006년부터 YTL이지만, 2005년까지는 TL과 YTL을 같이 사용하였음).

<미국>

연방 및 주의 주류세율을 가중평균하면 100리터당 총 USD 21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방세율은 배럴당 USD 18.0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간 200만배럴 이하를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업자의 경우 첫 60,000배럴에 대해서는 배럴당 USD 7.00의 세율을 적용하고 60,000배럴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럴당 USD 18.0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주류에 대한 누진세율은 없으며, 연방소비세(VAT)도 없다.

나. 와인에 대한 주세율

와인에 대한 과세 역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종량세 과세체계로 과세하고 있으며, 일반와인(still wine), 발포성와인(sparkling wine), 저알콜와인으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와인과 발포성와인을 차등하여 과세하는 국가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저알콜와인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하고 있다.

<표 III-2> 각국의 와인 과세(2005년 1월 기준)

국가명	일반와인			발포성와인			저알콜와인(알콜도수 8.5% 미만)		
	100리터당 종량세율		VAT(%)	100리터당 종량세율		VAT(%)	100리터당 종량세율		VAT(%)
	각국 화폐	미국 달러		각국 화폐	미국 달러		각국 화폐	미국 달러	
호주	각주		10.00	각주		10.00	각주		10.00
오스트리아	0.00	0.00	20.00	144.00	151.21	20.00	0.00	0.00	20.00
벨기에	47.10	49.46	21.00	161.13	169.20	21.00	14.87	15.62	21.00
캐나다	51.22	32.58	7.00/15.00	51.22	32.58	7.00/15.00	각주		7.00/15.00
체코공화국	0.00	0.00	22.00	2,340.00	77.97	22.00			22.00
덴마크	705.00	99.70	25.00	1,055.00	149.20	25.00	450.00	63.64	25.00
핀란드	212.00	222.62	22.00	212.00	222.62	22.00	각주		22.00
프랑스	3.40	3.57	19.60	8.40	8.82	19.60			19.60
독일	0.00	0.00	16.00	136.00	142.81	16.00	51.00	53.56	16.00
그리스	0.00	0.00		0.00	0.00	18.00			
헝가리	500.00	2.23		7,930.00	35.36	25.00			
아이슬랜드	51,480.00	637.32	24.50	51,480.00	637.32	24.50	각주		24.50
아일랜드	273.00	286.68	21.00	546.01	573.37	21.00	90.98	95.54	21.00
이탈리아	0.00	0.00		0.00	0.00	20.00			
일본	5,650.00	47.58		5,650.00	47.58	5.00			

〈표 Ⅲ-2〉의 계속

국가명	일반와인			발포성와인			저알콜와인(알콜도수 8.5% 미만)		
	100리터당 종량세율		VAT(%)	100리터당 종량세율		VAT(%)	100리터당 종량세율		VAT(%)
	각국 화폐	미국 달러		각국 화폐	미국 달러		각국 화폐	미국 달러	
한국	30.00	0.00	10.00	0.30	0.00	10.00	0.30	0.00	10.00
룩셈부르크	0.00	0.00	15.00	0.00	0.00	15.00	0.00	0.00	15.00
멕시코	25%/30%		15.00	25%/30%		15.00	25%	30.99	15.00
네덜란드	59.02	61.98	19.00	201.24	211.32	19.00	29.51		19.00
뉴질랜드	각주		12.50	각주		12.50	각주		12.50
노르웨이	4,260.00	615.19	24.00	4,260.00	615.19	24.00	각주		24.00
폴란드	136.00	35.43	22.00	136.00	35.43	22.00			22.00
포르투갈	0.00	0.00	19.00	0.00	0.00	19.00			19.00
슬로바키아 공화국	0.00	0.00	20.00	2,400.00	60.79	20.00	1,700.00	43.06	20.00
스페인	0.00	0.00		0.00	0.00	16.00			
스웨덴	2,208.00	254.45	25.00	2,208.00	254.45	25.00	각주		25.00
스위스	0.00	0.00	7.60	0.00	0.00	7.60	0.00	0.00	7.60
터키	150,000,000	93.00	18.00		372.00	18.00	15,000,000	93.00	
영국	154.37	248.75		220.54	355.38	17.50			18.00
미국	45.00	45.00	0.00	113.00	113.00	0.00	각주		0.00

자료: OECD(2006)

〈호주〉

증류, 발포성, 낮은 알콜도수 간의 세율 차이는 없다. 모든 와인에 대하여 Goods and Services Tax(GST)의 세율 10%와 Wine Equalisation Tax(WET)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하던 매상세의 세율 41%의 세율과 GST의 세율 10%의 차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WET를 도입하여 이후에는 29%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WET는 에탄알콜의 함량이 1.15% 이상인 포도주와 마랄라, 베르뭇, 와인카 테일과 크림 등의 포도주 제품과 과일주 또는 야채주 및 사이다, 페리주, 발효주 및 쉐이크 등에 적용하고 있다. 2004년 10월 1일부터 AUD 100만달러의 생산량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으며, 주정부는 셀러도어(cellar door)의 판매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의 환급 및 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다.

## 〈캐나다〉

캐나다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리터당 적용한다.

에탄올 알콜도수	세율(캐나다 화폐단위)
1.2% 미만	CAD 0.0205
1.2% 이상 ~ 7% 미만	CAD 0.2459
7% 이상	CAD 0.5122

## 〈덴마크〉

덴마크의 세율은 알콜도수가 15%에서 22%인 와인에 대해서는 DKK 1,055를 적용하고, 저알콜 와인은 1.2%에서 6%인 와인을 의미하고, 일반와인과 발포성와인은 6%에서 15%인 와인을 의미한다.

## 〈핀란드〉

핀란드의 알콜도수가 낮은 와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율을 적용한다.

에탄올 알콜도수	세율
1.2% 이상 ~ 2.8% 이상	EUR 4.54
2.8% 이상 ~ 5.5% 미만	EUR 103
5.5% 이상 ~ 8.0% 미만	EUR 152

## 〈아이슬랜드〉

〈표 Ⅲ-2〉에 있는 세율은 알콜도수 12%에 대한 세율이다. 그리고 2.25%의 알콜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알콜도수마다 ISK 5,280의 세율을 적용한다.

## 〈아일랜드〉

알콜도수가 5.5%보다 미만인 경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한국〉

제조업자의 주류세의 세율은 30%이고, 이에 대한 부과세 교육세의 세율은 10%이다. 알콜도수와 관계없이 일반와인과 발포성와인에 적용한다.

〈멕시코〉

모든 주류세는 가격에 따른다.

〈네덜란드〉

낮은 알콜도수의 발포성와인은 EUR 38.16의 세율을 적용한다. 알콜도수 5% 미만의 와인의 부가세율은 6%이다.

〈뉴질랜드〉

포도주 100리터당 NZD 216.47이다.

〈노르웨이〉

〈표 Ⅲ-2〉의 와인세율은 알콜도수가 12%인 경우이다. 알콜도수가 4.76%에서 22%인 와인은 100리터 기준으로 알콜도수당 NOK 355의 세율을 적용한다.

〈스페인〉

중간재와 알콜 도수 1.2% 이상 22% 미만의 경우에 알콜도수 1.2% 이상 15% 미만에는 100리터당 EUR 27.5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도수에는 100리터당 EUR 48.83의 세율을 적용한다.

〈스웨덴〉

와인에 대한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리고, 발포성와인에 대해서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에탄올 알콜도수	세율
2.25% 이상 ~ 4.5% 미만	SEK 758
4.5% 이상 ~ 7% 미만	SEK 1,120
7% 이상 ~ 8% 미만	SEK 1,541

〈터키〉

터키는 가격에 과세하는 증가세 체계이며 세율은 63.3%이거나 275.6%이다. 그러

나, 이러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표의 최저한 세액보다 작다면 최저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영국>

저알콜와인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100리터당 적용한다.

에탄올 알콜도수	세율(영국 화폐단위)
1.2% 이상 ~ 4% 미만	GBP 47.58
4% 이상 ~ 5.5% 미만	GBP 65.42
5.5% 이상 ~ 8.5% 미만	GBP 166.70
15% 이상 ~ 22% 미만	GBP 208.52

그리고, 사이다와 페리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100리터당 적용한다.

에탄올 알콜도수	세율(영국 화폐단위)
1.2% 이상 ~ 7.5% 미만	GBP 25.61
7.5% 이상 ~ 8.5% 미만	GBP 38.43

발포성와인과 페리주의 알콜도수가 5.5% 이상 8.5% 미만인 경우에는 GBP 166.70의 세율을 적용하며, 모든 일반 사이다제품의 알콜도수가 8.5 이상인 경우 제조와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 <미국>

연방 및 주의 세율을 가중평균하면 알콜도수가 14% 미만인 경우 100리터당 일반와인에 대해서는 USD 45를 적용하는 것이고, 발포성와인에 대해서는 USD 113을 적용하는 것이 된다. 연방세율은 다음과 같다.

알콜도수	세율
14% 미만	USD 1,07/gallon
14% 이상 ~ 21% 미만	USD 1,57/gallon
21% 이상 ~ 24% 미만	USD 3,15/gallon
탄산와인	USD 3,30/gallon
발포성와인	USD 3,40/gallon

1hl=26.42gallon이며, 연방소비세는 없다.

다.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증류주에 대한 과세 역시 거의 모든 국가가 종량세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맥주와 와인에 대한 과세제도와 다른 점은 알콜도수에 완전히 비례하여 주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Ⅲ-3〉 각국의 증류주 과세(2005년 1월 기준)

국가명	순수알콜 100리터당 종량세율			
	개별소비세		VAT(%)	소규모 생산자 경감세율 여부
	각국화폐	미국달러		
호주	각주		10.00	×
오스트리아	1,000.00	1,050.10	20.00	○
벨기에	1,660.89	1,744.10	21.00	×
캐나다	1,106.60	703.85	7.00/15.00	×
체코공화국	23,400.00	779.69	22.00	×
덴마크	27,500.00	3,889.05	25.00	×
핀란드	2,825.00	2,966.53	22.00	×
프랑스	1,450.00	1,522.65	19.60	×
독일	1,303.00	1,368.28	16.00	○
그리스	908.00	953.49	18.00	×
헝가리	1,670.00	7.45	25.00	×
아이슬랜드	516,120.00	6,389.57	24.50	×
아일랜드	3,925.00	4,121.64	21.00	×
이탈리아	645.36	677.69	20.00	×
일본	각주		5.00	×
한국	각주		10.00	×
룩셈부르크	1,041.14	1,093.30	15.00	×
멕시코	60%		15.00	×
네덜란드	1,775.00	1,863.93	19.00	×
뉴질랜드	2,164.70	1,134.45	12.50	×
노르웨이	54,400.00	7,855.90	24.00	×
폴란드	4,400.00	1,146.20	22.00	×
포르투갈	898.12	943.12	19.00	○
슬로바키아공화국	25,000.00	633.25	20.00	×
스페인	685.15	719.48	16.00	○
스웨덴	50,141.00	5,778.25	25.00	×
스위스	2,900.00	2,100.24	7.60	×
터키	5,813,000,000.00	3,604.06	18.00	×
영국	1,956.00	3,151.90	17.50	×
미국	920.00	920.00		×

자료: OECD(2006)

## 〈호주〉

브랜드, 위스키, 럼주 및 그 밖의 알콜도수가 10% 이상인 경우에 리터당 AUD 57.97의 세율을 적용한다. 알콜도수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브랜드의 경우 리터당 AUD 54.13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증류주인 경우에는 리터당 AUD 34.22의 세율을 적용한다.

## 〈오스트리아〉

소규모 생산업자의 경우 EUR 540의 세율을 적용한다.

## 〈캐나다〉

주정의 경우 에탄알콜도수를 기준으로 리터당 CAD 11,066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정의 에탄알콜도수가 7% 미만인 경우 리터당 CAD 0.2459의 세율을 적용한다.

## 〈핀란드〉

알콜도수 1.2%에서 2.8%의 CN - code 2208의 제품은 EUR 168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제품은 EUR 2,825의 세율을 적용한다.

## 〈독일〉

소규모 생산업자에 대해서 EUR 730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EUR 1,022의 세율을 적용한다.

## 〈그리스〉

도데카네스제도의 몇몇 지역이 인정하고 있는 우조술과 에탄알콜에 대한 세율은 EUR 454이다.

## 〈헝가리〉

소규모 농장에서 재배된 과일을 원료로 하여 소규모 양조업자에게 생산된 에탄알콜에 대해서는 HUF 77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농장에서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알콜 소비가 연간 50리터 미만이어야 한다.

<아이슬랜드>

알콜도수가 2.25% 이상인 경우에는 알콜도수당 ISK 5,28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본>

일본의 주류세율은 다음과 같다.

알콜도수	세율(일본 화폐단위)
위스키와 브랜디(40%)	JPY 40,900
주정(37%)	JPY 36,718
감류, 올류의 소주(25%)	JPY 24,810

<한국>

주류세는 종가세의 체계를 가지며,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희석식 소주, 증류식 소주의 주세율은 72%이며, 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세율은 30%이다.

<멕시코>

주류세는 종가세의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병에 든 생산주류 및 수입주류에 대해서 1리터당 세율을 적용하여 첫거래시 과세한다. 주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소비세는 매달 전국주류가격지수(National Alcoholic Beverages Price Index)의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데, 모든 주류의 최종거래시 과세된다. 일부 특정 주류에 대해서 리터당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알콜도수	세율(멕시코 화폐단위)
론	MXN 18.81
브랜디	MXN 22.62
데킬라	MXN 43.68
위스키	MXN 63.95
꼬냑	MXN 858.10
그 외	MXN 4.3 ~ MXN 881.25

## 〈네덜란드〉

알콜도수 0%에서 14%의 주류는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100리터당 NZD 2,164.70의 세율을 적용하며, 알콜도수 14% 이상의 주류는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100리터당 NZD 3,942.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알콜도수 14% 이상의 주류 중에서 와인과 베르무트주는 100리터당 NZD 216.47의 세율을 적용한다.

〈포르투갈〉 소규모 제조업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스페인〉

카나리아제도에서는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100리터당 EUR 494.06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규모 증류업자에 대해서는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100리터당 EUR 599.57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카나리아제도의 소규모 증류업자에 대해서 EUR 466.82의 세율을 적용한다.

## 〈스위스〉 가중평균세율

## 〈터키〉

주류세는 종가세의 체계를 따르며, 소비세율은 275.6%의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표 Ⅲ-3〉의 최저한 세액보다 소비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세액이 작다면, 최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영국〉

알콜도수가 22% 이상인 모든 주정에 대해서 증류주와 동일하게 과세한다.

## 〈미국〉

연방 및 주의 세율을 가중평균하면 주세율은 100리터당 USD 920이다. 2003년에 proof gallon당 연방세율은 USD 13.50의 세율이었다. proof gallon이란 알콜도수 50%인 US gallon(3.785리터)을 말한다. 연방소비세율은 없다.

## 2. OECD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제도

### 가. 미국

#### 1) 주류생산 및 주류정책의 연혁<sup>11)</sup>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류에 대한 자체적인 문화 및 전통을 가진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나라로서 발효주와 증류주의 생산을 위한 원료가 풍부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612년 상업적인 매주양조장이 뉴암스테르담에 최초로 세워졌다. 그리고 1640년에는 럼 증류소가 설립되었다. 또한 1800년대에 와서 와인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와인산업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서 노다지를 캐내지 못한 탄광업자들이 포도재배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번성하게 되었다.

미국의 주류정책은 역사적으로 주류소비에 따른 알콜 남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종교적인 차원에서 금주령과 금주기간 설정이 주된 정책방향이 되었다. 이 결과 1880년에는 8개의 州가 금주법을 통과시켰고, 전국적으로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주류에 대한 제조, 판매, 수출입, 유통을 불법화하였다. 한편 금주기간은 1951년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이때 13개 州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비록 1933년 전국적인 금주법(National Prohibition)이 폐지되었지만 일부 州에서는 주류판매를 정부가 독점하는 전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점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2005년 현재 18개 州에서 주류판매에 대하여 전매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주류판매 전매제 채택 州(monopoly states)”라고 불린다.

이상과 같은 미국 정부의 주류정책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주류소비 행태는 저도주를 선호하여 맥주의 소비가 가장 많고, 와인과 증류주의 소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11) 서현수(2004)의 p. 174와 [http://en.wikipedia.org/wiki/Alcoholic\\_beverage\\_control\\_state](http://en.wikipedia.org/wiki/Alcoholic_beverage_control_state)를 참조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 2) 미국의 주세체계

미국은 주류에 대하여 종량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별소비세인 주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연방주세(Federal alcohol tax)와 州주세(State alcohol tax)로 나눌 수 있다. 연방주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주류별로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州의 주세는 주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연방주세는 규제 목적과 세입 확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증류주, 와인 및 맥주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한편 2005년 7월 1일 이전에는 소위 “특별세(special tax)”라고 불리는 업종세(occupational tax)가 특정 제조업자와 소매·도매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되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는 2005년 7월부터 향후 3년간 특별세의 부과를 중지시켰고, 더 나아가 2008년 7월 1일부터 특별세를 완전히 폐지시킬 예정이다.

### 가) 세무신고(returns)

알콜성 음료의 제조자, 판매자 및 수입자와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의 제조업자는 개별소비세인 주세를 내게 된다. 이때 사업자들은 “특별세 등록 및 세무신고(Special Tax Registration and Return)”용 신고서식 TTB F 5630.5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등록하게 된다. TTB F 5630.5를 사용하는 알콜 관련 업종은 아래와 같다<sup>12)</sup>.

- (1) 증류주, 포도주, 맥주의 양조자와 중개업자
- (2) 증류자, 수입자, 증류주의 도매 및 소매 중개업자
- (3) 수출창고(exports warehouses)의 소유자

### 나) 특별세의 세율(Special Tax Rates/Occupational Tax Rates)

특별세(special tax)는 양조업자(brewers), 증류주의 정류업자(rectifiers), 도매업자(wholesale dealers), 맥주 수입업자(importers of beer)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12) 위의 내용에서 주류에 관한 사항만 설명하였다. 이 외에 담배, 담배종이 및 튜브의 제조업자, 주류 외의 알콜 제조업자도 포함된다.

실질적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세는 2005년 7월부터 3년간 과세가 정지되었고, 2008년 7월부터는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은 아래의 <표 Ⅲ-4>와 같다.

<표 Ⅲ-4> 특별세(special tax)의 세율

(단위: US달러)

NO	과세대상	세율	Code Sec.
1	증류주의 원료, 와인 보관 지하저장고, 와인 보관 창고, 세금을 선납한 병제조업자	1,000	5081(a)
2	위의 열거한 1의 납세의무자의 전년도 총수령액이 \$500,000 미만일 경우	500	5081(b)
3	양조자의 총수령액이 \$500,000 이상일 경우	1,000	5091(a)
4	양조자의 총수령액이 \$500,000 미만일 경우	500	5091(b)
5	주류 소매상인	250	5121(a)
6	주류 도매상인	500	5111(a)
7	맥주 소매상인	250	5121(b)
8	맥주 도매상인	500	5111(b)
9	증류주의 공업용 사용	250	5276(a)

자료: CCH, *U.S. Master Excise Tax Guide*, 5th, 2005 및 [www.ttb.gov](http://www.ttb.gov)

다) 주류에 대한 연방 개별소비세의 세율(Excise Tax Rates)

증류주, 와인, 맥주에 대한 개별소비세인 주세는 종량세이다. 연방정부의 주세는 알콜도수 및 수량(단위: 갤런)을 고려해서 과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세대상 및 세율은 아래의 <표 Ⅲ-5>와 같다.

〈표 III-5〉 주류에 대한 연방 개별소비세 세율

주종	세 금	판매용기당 세금
맥주	배럴(31갤런)	12온스 캔
정상세율	\$18	\$0.05
저세율	연간 2백만 배럴 이하를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업자의 경우: - 60,000배럴 이하분: \$7 - 60,000배럴 초과분: \$18	\$0.02
와인	와인 갤런(wine gallon)	750ml 병
알콜 도수 14% 이하	\$1.07	\$0.21
14~21%	\$1.57	\$0.31
21~24%	\$3.15	\$0.62
천연발포성 와인	\$3.40	\$0.67
탄산 와인	\$3.30	\$0.65
발효사과술	\$0.226	\$0.04
증류주	표준강도 갤런(proof gallon) <sup>1)</sup>	750ml 병
모든 증류주	\$13.50 단, 와인 등의 함량에 따라 세액공제해줌	\$2.14

주: 1) 표준강도 갤런이란 알콜도수 50%인 US gallon(3,785리터)을 말하며 제품의 알콜도수에 따라 세금은 조정된다.

출처: [http://www.ttb.gov/tax\\_audit/atftaxes.shtml](http://www.ttb.gov/tax_audit/atftaxes.shtml)(2007년 9월 11일 접속)

#### 라) 각 주의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율

대부분의 주에서는 연방주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와 더불어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점 내에서 음주가 가능한 주류 판매면허를 가진 상점(on-premises)에서 구입한 주류에 대하여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고 있다. 아래의 〈표 III-6〉은 각 주의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Ⅲ-6〉 각 주의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단위: 갤런당 미국달러)

주명	와인 (excise tax rates on wine)	맥주 (excise tax rates on beer)	증류주 (excise tax rates on distilled spirits)
알라바마(Alabama)	1.70	0.53	주석
알래스카(Alaska)	2.50	1.07	12.50
아리조나(Arizona)	0.84	0.16	3.00
알칸소(Arkansas)	0.75	0.23	2.50
캘리포니아(California)	0.20	0.20	3.30
콜로라도(Colorado)	0.32	0.08	2.28
코네티컷(Connecticut)	0.60	0.19	4.50
델라웨어(Delaware)	0.97	0.16	5.46
플로리다(Florida)	2.25	0.48	6.50
조지아(Georgia)	1.51	0.32	3.79
하와이(Hawaii)	1.38	0.93	5.98
아이다호(Idaho)	0.45	0.15	주석
일리노이(Illinois)	0.73	0.185	4.50
인디애나(Indiana)	0.47	0.115	2.68
아이오와(Iowa)	1.75	0.19	주석
켄사스(Kansas)	0.30	0.18	2.50
켄터키(Kentucky)	0.50	0.08	1.92
루이지애나(Louisiana)	0.11	0.32	2.50
메인(Maine)	0.60	0.35	주석
메릴랜드(Maryland)	0.40	0.09	1.50
메사추세츠 (Massachusetts)	0.55	0.11	4.05
미시간(Michigan)	0.51	0.20	주석
미네소타(Minnesota)	0.30	0.15	5.03
미시시피(Mississippi)	0.35	0.4268	주석
미조리(Missouri)	0.30	0.06	2.00
몬타나(Montana)	1.06	0.14	주석
네브라스카(Nebraska)	0.95	0.31	3.75
네바다(Nevada)	0.70	0.16	3.60
뉴햄프셔 (New Hampshire)	주석	0.30	주석

〈표 III-6〉의 계속

주명	와인 (excise tax rates on wine)	맥주 (excise tax rates on beer)	증류주 (excise tax rates on distilled spirits)
뉴저지(New Jersey)	0.70	0.12	4.40
뉴멕시코(New Mexico)	1.70	0.41	6.06
뉴욕(New York)	0.19	0.11	6.44
노스 캐롤리나 (North Carolina)	0.79	0.53	주석
노스 다코타 (North Dakota)	0.50	0.16	2.50
오하이오(Ohio)	0.30	0.18	주석
오클라호마(Oklahoma)	0.72	0.40	5.56
오래곤(Oregon)	0.67	0.08	주석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석	0.08	주석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	0.60	0.10	3.75
사우스 캐롤리나 (South Carolina)	0.90	0.77	2.72
사우스 다코타 (South Dakota)	0.93	0.27	3.93
테네시(Tennessee)	1.21	0.14	4.40
텍사스(Texas)	0.20	0.19	2.40
유타(Utah)	주석	0.41	주석
벌몬트(Vernont)	0.55	0.265	주석
버지니아(Virginia)	1.51	0.26	주석
워싱턴(Washington)	0.87	0.261	주석
웨스트 버지니아 (West Virginia)	1.00	0.18	주석
위스콘신(Wisconsin)	0.25	0.06	3.25
아이오밍(Wyoming)	주석	0.02	주석
콜롬비아 연방특수지구 (Dist. of Columbia)	0.30	0.09	1.50

자료: www.taxadmin.org에서 참조하여 구성(2007년 1월 1일 기준)

- 와인 소비세율의 주석 : 주석 표시된 4개의 주는 주판매점(state stores)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세수입(Revenue)은 다양한 세금, 수수료 및 순이익에서 발생된다.
- 증류주 소비세율의 주석 : 주석 표시된 18개의 주는 증류주의 판매관리를 직접 주정부가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세수입(Revenue)은 다양한 세금, 수수료 및 순이익에서 발생된다.

### 3) 미국의 주류행정체계

#### 가) 주류행정 담당부서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단계에서 주류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 차원의 주세행정은 1990년 이전의 경우 미국 국세청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1990년부터 주세행정은 재무부 산하의 ‘알콜, 담배 및 총기관리국(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이하 BATF)’이 담당하였다.

한편 BATF는 2002년 제정된 ‘홈랜드보장법(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에 의해서 2003년 1월 24일부터 사법부에 권한이 옮겨가는 ‘알콜, 담배, 총기 및 폭발물관리국(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이하 ATF)<sup>13)</sup>과 재무부에 남아 있는 ‘알콜, 담배에 대한 과세 및 거래국(the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이하 TTB)’으로 나뉘어졌다. 주류와 관련하여 ATF는 기존 BATF가 행하였던 주류 밀매거래에 대한 범죄 조사를 담당하며, TTB는 주세에 관한 내국세법 제51~52장(Inland Revenue Code chapters 51 and 52)을 집행한다.

TTB의 임무(mission)는 첫째, 주류, 담배, 총기류(firearms), 군수품(ammunition)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둘째, 법에 적합하게 이러한 물품들이 라벨을 붙이고, 광고되며, 시장에서 판매되게 하는 것도 TTB의 임무 중 하나이다. 셋째, 소비자 및 세수를 보호하고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법규를 행정하는 것이다.

TTB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보호(protect the public)  
 소비자 사기를 방지하고, 연방의 상품·안전·배포규정의 요건을 알콜과 담배제품이 충족시키게 하며, 높은 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함
- (2) 세금징수(collect the revenue)  
 적법한 세수를 징수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 조세회피 및 다른 범죄의 도관체(construct)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제거, 규제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
- (3) 관리관행 개선(refine management practices)  
 높은 질의 관리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여 TTB의 모든 프로그램이 최적 상태의 효율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갖고 운영되게 함

13) 알콜, 담배밀수법의 범죄와 규제위반 등을 조사하는 업무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정부에 속한 TTB은 주류의 제조와 유통, 수입업체에 대해서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포장, 광고, 음주연령,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정부<sup>14)</sup> 차원에서는 주로 주류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일반소매점의 관리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행하고 있다. 또한 주류 판매의 허용 및 금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sup>15)</sup>에 속한다.

나) 주류의 제조제도<sup>16)</sup>

미국에서 주류의 제조에 대해서는 주류의 판매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편이다.

(1) 제조시설 기준

주류를 제조할 경우 제조시설에 대해서 주종별로 양조장건물, 시설, 용기 등에 관해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포도주 제조시설은 보세양조장, 보세저장소 또는 납세 포도주 병포장 공장 등으로 분류 지정하고 있으며 증류주 제조시설은 제조장의 물리적 보안장치에 대한 설명과 주요 장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 III-7〉 제조시설 기준

일반규정	- 주종별로 양조장건물, 시설, 용기 등에 관해 기준을 상세히 규정.
포도주 제조시설기준	- 포도주 제조시설은 보세양조장, 보세저장소 또는 납세 포도주 병포장 공장 등으로 분류 지정.
증류주 제조시설기준	- 제조장의 물리적 보안장치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 주요 장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주류 제조장 시설	- 제조장 건축물의 건축 및 설비상의 요건 규정. - 건물은 실용적인 재료들로 건축해야 하며, 세월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함. - 제조장 소유자는 증류주 제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설비는 세월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충족시켜야 함.

14) 주류판매에 있어서 전매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18개 주이며 나머지는 면허제를 채택하고 있음.

15) 이를 local option이라 함.

16) KREI · 농수산물유통공사, 「외국의 농가 및 소규모 주류생산 지원제도와 시사점」,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4.12에서 발췌하여 수정.

(2) 제조방법 기준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제조원료 및 첨가물료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주정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제조방법 사전 신고 시에는 제조방법에서부터 제조환경, 이전증명에 이르기까지 사전 신고조항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조항에 의거, 승인을 얻기 전에는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한다.

〈표 Ⅲ-8〉 제조방법 기준

일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제조원료와 첨가물료를 사전 신고</li> <li>- 주정의 경우 원료사용 규제</li> </ul>
제조방법 사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방법에서부터 제조환경, 이전증명에 이르기까지 사전 신고</li> <li>- 관련조항에 의거, 승인을 얻기 전에는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함</li> </ul>
원료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맥주의 원료사용 제한</li> <li>- 증류주의 처리를 위해 원재료 규제</li> </ul>

(3) 제조규격 기준

주류의 규격에 대해서 주류 및 주정 제품별로 나누어 규격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포도주, 과실주 등에 대한 알콜 함유량, 설탕함유량, 휘발성 산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 규제하고 있으며 증류주의 규격 기준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과실주의 종류를 9가지로 분류하여 각 등급과 종류별로 별도의 판별 기준 제시하고 있다.

(4) 기타 기준

주류상표 기재내용은 제품등급, 제조방법, 원산지, 알콜함유량, 재료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활자크기, 상표위치, 글자배치 등을 규제한다.

〈표 III-9〉 제조규격 기준

일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 및 주정 제품별로 엄격하게 관리</li> <li>- 포도주, 과실주 등에 대한 알콜 함유량, 설탕함유량, 휘발성 산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 규제</li> <li>- 증류주의 규격 제한</li> </ul>
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주의 종류를 정밀하게 분류하여 각 등급과 종류별로 별도의 판별 기준 제시.</li> <li>유형1 : 포도만을 원료로 사용한 천연 포도주    유형2 : 발포성 포도주</li> <li>유형3 : 탄산포도주(carbonated grape wine)    유형4 : 감귤주(citrus wine)</li> <li>유형5 : 일반과실주(fruit wine)</li> <li>유형6 : 여타 농산물로부터 얻어진 과실주</li> <li>유형7 : 식욕증진용 과실주(aperitif wine)</li> <li>유형8 : 모조 과실주(Imitation wine)와 기준 이하의 또는 기준과 다른 과실주</li> <li>유형9 : 나무의 지방이 든 과실주(retsina wine)</li> </ul>
증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류주를 다음과 같이 총 1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li> <li>유형1 : 중성 주정 또는 알콜    유형2 : 위스키    유형3 : 진    유형4 : 브랜디</li> <li>유형5 : 혼합 애플잭 유형의 제품    유형6 : 럼    유형7 : 데킬라</li> <li>유형8 : 리큐르 등 혼성주 제품</li> <li>유형9 : 향브랜디, 향진, 향럼, 향보드카, 향위스키    유형10 : 모조품</li> <li>유형11 : 지역적 명칭을 배타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예: 스카치위스키)</li> <li>유형12 : 지역적 명칭이 없는 일반적인 제품</li> </ul>
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급이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유형도 표시해야 함.</li> <li>단, 등급 및 유형의 명세는 업계에 알려진 제품의 명칭에 따름.</li> <li>- 제품이 특정 명칭하에서 업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제품의 성분에 대한 적절하고도 진실한 진술과 함께 특징적이거나 독창적인 이름이 적히게 됨.</li> </ul>

다) 주류의 판매제도

(1) 주류도매와 수입판매제도

미국에서는 ‘연방주류관리법(The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이하 FAA Act)’에 따라 제조된 주류(증류주, 와인, 맥주 등)의 재판매를 위하여 도매 또는 수입을 하는 자는 TTB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류 도매 및 수입판매업의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TTB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 전에 TTB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FAA Act에 따른 도매업/수입업 기본 허가양식인 TTB F

5100.24를 작성하여야 한다.

FAA Act에 따른 도매업/수입업 기본허가양식인 TTB F 5100.24 작성은 FAA Act에 따라 비공업적 용도로 증류주나 와인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자와 주류를 도매하거나 미국 내로 수입하는 자가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증류주나 와인의 비공업적 용도는 식음료로 사용되는 모든 음료를 포함한다. FAA Act에 따른 도매업이란 재판매 목적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FAA Act에서 알콜 음료란 알콜함량 0.5% 이상의 증류주, 와인, 발효된 곡류음료를 포함한 맥주를 의미한다. 그리고, 병입업자, 포장업자와 수입업자는 TTB에 의해 승인된 상표인증서(TTB 5100.31)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상표승인은 주류의 판매나 출하를 위한 유통행위에 요구되어지며, 내국거래나 외국상거래에도 적용된다. 또한 상표승인은 세관으로부터 반입되는 특별한 수입주류의 통관에도 적용된다. TTB는 FAA Act에 따른 상기의 기본허가를 거친 후에 상표인증서를 발급한다. 상표를 인쇄하기 전에 상표 초안을 TTB에 제출하여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다. FAA Act의 기본허가의 회사명은 상표 목적을 위한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증류주 공장이나 와인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거나 맥주, 와인, 증류주를 거래하고 있다면 TTB 5630.5인 특별세 등록과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을 두지 않더라도 고용주에 대한 신원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EIN)을 받아야 된다. EIN번호의 취득을 위해서는 SS-4양식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 (2) 주류 소매판매제도

맥주, 와인, 증류주 등 주류를 취급하는 소매업자는 연방정부의 법률 및 시행규칙(laws and regulations)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록 소매업자에 대한 특별세는 사실상 2005년 7월부터 폐지되었지만, 모든 소매업자는 사업장 등록을 위해 특별세 등록과 세무신고서(TTB 5630.5)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할 세액은 0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소유권이나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는 등록정보를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특별세 소인(Federal Tax Stamp)은 납세자가 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발급되고, 납세자가 단지 주류의 도매·소매만을 행하는 경우 특별세 소인을 발급

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매업자의 등록의 증표로서 납세자가 속한 주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는 그 주에서 등록한 소매업자의 목록을 받는다.

소매업자가 증류주나 와인, 맥주를 제한된 소매업자 이외의 다른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게 되면 이는 도매행위가 된다. 특히 소매업자가 같은 사람에게 한번에 20갤런(75.7ℓ) 이상의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이는 도매영업으로 간주된다. 이때 도매영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구입자가 사업자(dealer)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매업자는 FAA Act에 따라 도매업 기본 허가(wholesaler's basic permit)을 획득한 경우에만 재판매용으로 다른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소매업자가 도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게 되면, 5,000달러의 패널티를 물게 되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3) 기타사항

증류주 제조장과 수입업자는 모든 증류주병에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첨부물이나 장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위스키, 진, 럼, 브랜디, 보드카 등 모든 증류주에 해당된다. 밀봉은 용기가 일단 개봉되면 파손되어 남지 않는 형태여야 한다. 소매업자는 밀봉되지 않았거나 밀봉이 파손된 증류주를 공급받게 되면 이를 TTB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소매업자나 종업원은 주류가 담겨 있는 병에 다른 증류주를 재충전하거나 다른 증류주 또는 다른 물질<sup>17)</sup>을 첨가하여 주류병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모든 소매업자는 장부에 주류반입금지과 수량, 구입처, 송장과 청구서의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갤런 이상의 주류를 동일한 사람에게 한번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날짜, 구매자의 주소와 성명, 판매주류의 종류와 수량, 판매된 증류주의 시리얼번호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기타 기록유지에 대한 위반의 경우는 1,000달러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17) 물을 포함함.

소매업자의 영업장이나 주류를 보관하는 장소는 TTB 직원에 의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TTB 직원은 알콜관리법에 따라 소매업자의 기록을 검토하고 세금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특별세를 받았을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만약 소매업자가 TTB 직원에 의한 압류주류를 빼돌리거나 이의 시도가 있을 경우 500달러 이상의 벌금 또는 압류된 주류의 2배에 해당되는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라) 주정부의 주류판매제도

주정부는 주류의 판매 및 유통관련 활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법적 음주 허용연령 및 허용 유형, 판매점의 수, 광고제한, 판매가능일 및 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지역정부는 지역 내에서의 주류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주별 주류판매관리제도를 살펴보면, 18개 주는 주정부가 직접 주류유통에 개입하는 전매제를 실시중이고, 나머지 주는 주류의 생산 및 유통을 허가 받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면허제도를 취하고 있다. 전매제도를 채택한 주정부 중에서도 맥주와 같은 저알콜 주류판매에 대해서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류 도매 유통부문에만 전매제도를 채택하는 주도 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으로 면허제도를 이용하는 캘리포니아주<sup>18)</sup>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캘리포니아 주류관리청

일반적으로 미국의 주정부에서 주류 제조, 유통, 소비에 관련된 통제를 전담하는 부서는 주류관리위원회(Alcoholic Beverage Control Board) 또는 주류관리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 Board)이다. 캘리포니아 주류관리청은 연방정부의 권한위임하에 주정부 산하에 조직 및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주류관리청은 주류의 제조, 수입, 판매면허에 관련된 업무를 결정 및 처리할 수 있으며, 면허세(License Fee)와 특별세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와 윤리 및 안전에 대해

---

18) 이창환(2002) 참조.

서도 관리하고 있다.

## (2) 면허의 종류

전형적인 주류판매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주류관리법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에 의하면 주류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음식점 등 주류관련 모든 업종을 면허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류산업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면허의 종류가 80여종에 이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판매업면허는 식료품점 및 주류판매점과 같이 판매점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가정용 판매업면허(off-sale license)와 레스토랑 및 주점과 같이 판매점에서 주류를 소비할 목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소용 판매업면허(on-sale license)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판매대상, 취급주종, 판매장소에 따라서도 다른 면허가 부여된다.

## (3) 면허조건

### (가) 인적면허

수입, 도매 및 소매 등 주류 유통경로를 건전하게 조성하고 불법유통 등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면허신청자 모두에 대한 인적 면허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면허 신청인의 자격으로는 국적, 거주지, 도덕성, 연령 등이 고려되며,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일정기간 이상 卅 내에서 거주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주류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발급이 제한되기도 한다.

### (나) 거리 및 면허 수 제한

공익을 위해서 일정지역에서의 주류판매면허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허 수의 제한은 공익, 위생, 안전, 복지 등을 위한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인구비율에 의하여 발급이 인정되는 일정 수 이상의 면허가 발급된 지역의 신설판매장은 기존 면허의 이전양도에 의해서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캐나다

### 1) 주류생산 및 주류정책의 연혁<sup>19)</sup>

캐나다의 경우 식민지 개척자들이 가내 양조장을 운영하였으나 상업성이 떨어져서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주류가 수입되었다. 이렇게 반입된 주류는 원주민의 모피와 물물교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1663년 주류규제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주류의 제조와 유통을 통제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최초의 증류주 제조장이 퀘백주에 설립되었고, 1840년까지 약 200개소의 증류주 제조장이 운영되었다.

한편 맥주 제조장도 주류 수입으로 인한 자금유출을 막고 풍부한 곡류를 활용하고 저도주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업적인 매주(賣酒) 제조장이 1668년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특히 당시 캐나다는 맥주같은 저도주보다는 위스키같은 고도주를 선호하여서 정부는 증류주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주류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1878년에 제정된 절주법은 주류판매허용 여부를 각 주정부들이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퀘백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절주법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절주법은 주류소비 행태에 큰 변화를 야기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증류주의 소비가 전체 주류소비의 과반수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알콜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세율 인상, 음주단속법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알콜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 2) 캐나다의 주류 과세체계

캐나다의 주류에 대한 과세는 생산단계에서 과세되는 개별소비세(excise duties)가 있다. 그리고, 주류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량세 체계이며, 연방주세의 세율은 주종

19) 서현수(2004)의 p. 179~180를 요약·정리한 것임

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다만, 위의 외국의 주세율에서 캐나다의 세율은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세율이며, 캐나다의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excise duties)의 세율은 2006년 7월 1일자로 다음과 같다.

〈표 III-10〉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단위: 캐나다 달러)

구 분	구체적 내용	세율 (알콜도수 기준)
증류주	일반증류주	\$11,696/ℓ
	에탄알콜도수 7% 미만의 증류주	\$0,295/ℓ
	면허있는 자에 의해서 수입해오거나 인도를 통해 수입한 증류주	\$0.12/ℓ
와인	에탄알콜도수 7% 이상의 와인	\$0.62/ℓ
	에탄알콜도수 1.2% 이상 ~ 7% 미만	\$0,295/ℓ
	에탄알콜도수 1.2% 미만	\$0.0205/ℓ
맥주 (연간 생산량 300,00hl 이상의 생산자와 수입업자)	에탄알콜도수 2.5% 이상	\$31,22/hl
	에탄알콜도수 1.2% 이상 ~ 2.5% 미만	\$15.61/hl
	에탄알콜도수 1.2% 미만	\$2,591/hl
맥주 : 2.5% 이상 (연간 생산량 300,00hl 이상의 생산자)	연간 생산량 0 ~ 2,000(hl)	\$3,122/hl
	연간 생산량 2,001 ~ 5,000(hl)	\$6,244/hl
	연간 생산량 5,001 ~ 15,000(hl)	\$12,488/hl
	연간 생산량 15,001 ~ 50,000(hl)	\$21,854/hl
	연간 생산량 50,001 ~ 75,000(hl)	\$26,537/hl
맥주 : 1.2% 이상 ~ 2.5% 미만 (연간 생산량 300,00hl 미만의 생산자)	연간 생산량 75,001 ~ 300,000(hl)	\$31,22/hl
	연간 생산량 0 ~ 2,000(hl)	\$1,561/hl
	연간 생산량 2,001 ~ 5,000(hl)	\$3,122/hl
	연간 생산량 5,001 ~ 15,000(hl)	\$6,244/hl
	연간 생산량 15,001 ~ 50,000(hl)	\$10,927/hl
맥주 : 1.2% 미만 (연간 생산량 300,00hl 미만의 생산자)	연간 생산량 50,001 ~ 75,000(hl)	\$13,269/hl
	연간 생산량 75,001 ~ 300,000(hl)	\$15,61/hl
	연간 생산량 0 ~ 2,000(hl)	\$0,259/hl
	연간 생산량 2,001 ~ 5,000(hl)	\$0,518/hl
	연간 생산량 5,001 ~ 15,000(hl)	\$1,036/hl
맥주 : 1.2% 미만 (연간 생산량 300,00hl 미만의 생산자)	연간 생산량 15,001 ~ 50,000(hl)	\$1,814/hl
	연간 생산량 50,001 ~ 75,000(hl)	\$2,202/hl
	연간 생산량 75,001 ~ 300,000(hl)	\$2,591/hl

자료: Canada Revenue Agency, "Excise Duty Notice", 2006.7  
<http://www.cra-arc.gc.ca/E/pub/em/edn9/edn9-e.pdf>

### 3) 캐나다의 주류행정

#### 가) 개요

캐나다는 10개 州와 3개의 준주(準州)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서 주류청에서 주류 면허를 소지한 식당 및 술집들을 관리하거나 직접 주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큰 주류시장은 온타리오주(Ontario)이며 그 뒤를 퀘벡주(Quebec),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알버타주(Alberta) 순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의 주류관리위원회(The 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류 구매자로 알려져 있다<sup>20)</sup>.

캐나다의 주류분류는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에 의거, NAICS 312120 (breweres: 맥주양조), NAICS 312130(Wineries: 와인양조), NAICS 312140 (Distilleries: 증류주(양주)양조)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 나) 주류 행정제도

##### (1) 주류 면허제도

캐나다의 주류제조면허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판매면허에 대해서는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는 주의 주류관리청<sup>21)</sup>이 주류판매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주는 자체적으로 주류위원회<sup>22)</sup>를 두고 모든 주류 생산업체의 세금 환급,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 및 수출보조금 사후정산 지원,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연방정부는 모든 주류의 포장과 함유성분과 관련하여 ‘주류관리법(Liquor Control Act)’이라는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각 주별로 성분표시 및 주류판매에 관한 법률은 다소 차이가 있다.

20) [http://en.wikipedia.org/wiki/Liquor\\_Control\\_Board\\_of\\_Ontario](http://en.wikipedia.org/wiki/Liquor_Control_Board_of_Ontario)

21) 온타리오주의 알콜관리청

22) 온타리오주의 알콜과 게임위원회

## (2) 주류 가격 및 광고

가격 책정에 있어 각 주의 위원회는 주류의 적절한 판매 가격대를 권장하거나 최고 가격(maximum price)을 제한하는 등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소매업체에 최고가격 책정을 권유할 수 있다. 주류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는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광고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구매를 장려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는데, 소비자 대상 홍보 프로그램 중에는 각 지점에 소비자들이 주류를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직접 소비자를 방문, 신제품을 홍보하는 활동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주류에 대해 광고를 할 경우 각 브랜드의 양조업체마다 광고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주별로 주류섭취가 허용되는 법적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광고 내용 또한 위원회에서 제한하고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주류광고의 내용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광고법(Broadcasting Act)의 라디오와 TV광고 시행규칙(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Regulations)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각 주정부 역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광고의 내용을 심의한다.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한 광고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대신 각 주의 주류청이 규제를 하고 있다.

라디오와 TV광고 시행규칙(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Regulations) 중 알콜에 관한 광고규정(code for Broadcast Advertising of Alcoholic Beverages)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주류광고가 법적으로 주류 구입과 섭취가 금지된 연령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작, 방영되거나 이들에게 주류 소비와 섭취를 권장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류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는 현재는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또한 주류업체가 자발적으로 광고내용의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캐나다 광고표준 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Canada/ ASC)는 주류광고가 연방정부 및 각 주 주류청이 제정한 기준에 합당한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협회는 최상의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공급원들에게 기술개발 및 습득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3) 기타

대금 지불 기간과 관련하여 주류청에서 신제품을 구입할 경우 90일의 대금 납부기

간을 정하고 있는데 주류청의 상품목록에 기재되고 상품배급이 진행된다면 주류청은 상품을 납품한 주류업체에게 상품 수취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British Columbia)나 알버타주(Alberta)의 경우 위탁판매에 의한 상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주류업체는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기타 지원기관으로는 캐나다 주류시장의 확장과 이익창출을 위해 결성된 1998년 키릭우드 그룹(The Kirkwood Group/이하 TKG)이 있으며, TKG는 개인 주류 업체들을 대표하는 국가적인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사항으로는 캐나다정부는 국산주류의 품질 개선을 위해 각 주마다 수출허가 면허를 제정, 품질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허가 및 면허에 대한 규정은 각 주마다 ‘주류기업법(Liquor Corporation Act)’, ‘주류관리법(Liquor Control Act)’, ‘주류면허 시행규칙(Liquor Licensing Regulations)’에 기재되어 있다.

#### 다) 온타리오주의 사례

##### (1) 개 요

온타리오주의 경우 모든 주류는 ‘온타리오주의 주류관리청(The 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이하 LCBO)’에서 전매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LCBO는 온타리오주가 소유한 공기업(Crown corporation)으로 1927년 설립되었으며 소매 체인점을 활용해 온타리오주에서의 주류(liquor, wine, beer)를 판매하거나 주류판매면허를 가진 판매점이나 회사에 주류를 배급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맥주는 Brewers Retail Inc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맥주소매점(the beer store)에서도 판매되며, 와인은 와인양조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자체 상표를 갖고 판매될 수 있다.

그리고, ‘알콜과 게임위원회(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이하 AGCO)’는 온타리오주의 주류산업과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준사법적 기관(a quasi-judicial Crown agency)이다. 이 기관은 ‘1996년의 주류와 게임규제 및 공공보호법(the Alcohol and Gaming Regulation and Public Protection Act of 1996)’에 의거하여 ‘온타리오 주류면허 위원회(the Liquor License Board of Ontario)’와

‘온타리오 게임관리 위원회(the Gaming Control Commission Ontario)’를 통합하여 1998년에 설립되었다. 온타리오주의 알콜과 게임위원회는 ‘주류면허법(the Liquor Licence Act)’, ‘주류관리법(Liquor Control Act)’, ‘와인성분 및 표시규정법(Wine Content and Labelling Act)’, ‘게임관리법(Gaming Control Act)’등에 관한 행정을 담당한다. 따라서 온타리오주의 알콜과 게임위원회의 임무는 주류의 판매·소비를 규제하여 절제되고 책임 있는 주류문화를 촉진시키고 카지노와 자선게임이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온타리오 정부 서비스부(the Ontario Ministry of Government Service)<sup>23)</sup>’에 업무를 보고하게 된다.

## (2) 온타리오주의 알콜 및 게임위원회(the Liquor License Board of Ontario/AGCO)

온타리오주의 알콜 및 게임위원회는 주류에 대한 다양한 면허와 허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류판매면허(licence to sell beverage alcohol)
- 시설요건을 충족하는 양조면허(licence for brew-on-premise facilities)
- 주류유통면허제도(licence for liquor delivery service)
- 제조면허(manufacturers' licence)
- 주류제조를 나타내는 면허(licence to represent a manufacturer of beverage alcohol)
- 특별한 경우에는 주류에 대한 판매 및 서비스를 허가해주는 면허(special occasion permits for the sale and service of beverage alcohol on special occasions) 예를 들어 모금활동(cas bars at fundraising), 결혼 및 리셉션같은 경우

그리고, 주류에 대한 판매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

23) 이는 종전의 온타리오주의 ‘소비자·기업서비스부(the 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가 ‘관리위원회 사무처(the Management Board Secretariat)’와 통합하여 2005년 만들어진 부서이다.

있다.

-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주류판매 금지
- 술취한 사람에게는 주류판매 금지
- 새벽 2시 이후부터 오전 11시까지의 주류판매 금지
- 불법적인 주류판매 금지
- 주류를 소비할 수 있는 장소규정(거주지, 면허허가구역 등)

또한, 주류관리법(Liquor Control Act)의 Section 3(1)b, e, f와 3(2)에 의하여 온타리오주의 알콜 및 게임위원회(The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는 주류관리청(The 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으로부터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 공공거래 주류유통 관리
- 맥주, 증류주, 와인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을 제조업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증류주, 맥주, 와인 판매점에 판매할 수 있는 있게 허용
- 두 번째 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마케팅 방법과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
- 두 번째 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판매점의 위치는 주류면허법(the Liquor Licence Act)에 의해 결정
- 두 번째 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판매점에 대한 허가와 관련한 요건 및 시행규칙을 제정
- 공공거래에서 주류의 유통과 관련하여 부여된 허가와 관련한 요건 및 시행규칙을 제정

그리고, ‘와인성분과 표시규정법 2004(Wine Content and Labelling Act)’에서는 와인제조업자가 포도나 포도제품을 수입하여 첨가하고 와인을 제조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온타리오 포도나 포도제품에 최소한 30% 이상이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수입관리제도

### (1) 수입허가요건

주류수입허가는 주정부 또는 각 주의 해당 관할기관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개인은 상업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캐나다 내 또는 국외에서 주류를 수입, 관리 또는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제정 법규에 따라 각 주의 해당 관할기관에서 주류수입 허가를 소유한 개인은 이러한 금지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캐나다로 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7%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를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맥주, 양주 및 와인에 대해 개별소비세(Excise Duty)<sup>24)</sup>를 징수하고 있다. 주류상품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또는 국외로 수출될 때 모든 화물수송용 단위(Conveyances, Containers, Compartments)들은 통관인증과 함께 봉인되어야 한다. 상표상 성분표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 단백질과 지방함량의 성분을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 소비자협회는 각 성분의 정확한 표시를 권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 주류의 경우 이와 같은 영양소의 함량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식품과 같이 정확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상표표기는 영어로 해야 되며 글자크기의 규정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다.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제품명, 용량, 알콜도수, 기준 음료(standard drink), 첨가물 내역, 알러지 유발가능 물질의 표기, 업체명 및 주소,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캐나다 음식보호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이하 CFIA)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가공된 식품은 아래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최저한의 등급 또는 기본요소 함량
- 규격화된 용기
- 정확한 상표명 기재

### (2) 수입절차

모든 품목에 관한 수입절차는 캐나다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이하 CBSA)에서 관리하며 주류의 경우 ‘주류수입법(Importation of Intoxicating

---

24) 생산단계에서 과세

Liquors Act)’을 준수해야한다. ‘주류(Intoxicating Liquors)’에는 모든 종류의 주류의 불법적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허가나 인증서 없이 판매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다. 수입절차 전 확인사항으로는 아래와 같다.

- 수입전 캐나다로 수입가능한 품목인지 확인
- 수입품목의 생산국가와 생산업체의 소속국가 확인
- 수입품목의 HS Code(10digit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확인
- 수입품목의 HS Code에 해당하는 관세율인지 확인

## 다. 영국

### 1) 주류생산 및 주류정책의 연혁<sup>25)</sup>

영국의 경우 로마시대 이전부터 켈트족이 꿀술, 사과술을 만든 이후 주류는 영국사회의 전통이 되어 왔고, 1600년대부터 맥주는 가장 인기 있는 주류였다. 그러나 1700년대에는 진(gin) 같은 증류주 소비의 증가로 인해 사회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영국은 전통적으로 주류생산과 유통에 있어 엄격한 규제와 제한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한편 1850년대 이후에는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위스키 생산을 지원·육성하여 세계 제일의 위스키 생산국으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위스키의 수출을 통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임에 따라 주류산업이 영국의 주요산업으로 등장하였고, 최근에도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주류제조 및 유통에 있어서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 영국의 주류과세체계

영국의 주류에 대한 과세는 주류세(taxes on alcohol)와 소비세(excise duties)로 나눌 수 있으며, 종량세로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EU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세

---

25) 서현수(2004)의 p. 179~180를 요약·정리한 것임

율을 적용하는 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1〉 영국의 주류에 대한 세율

(단위: 영국 파운드)

구 분		세율(100리터 기준)	세율(bottle 기준) VAT 17.5%제외
저알콜주	알콜도수 4% 미만	53.06	0.20
	알콜도수 4% 이상 ~ 5.5% 미만	72.95	(27.5cl@5.5%)
사이다 및 페리주(알콜도수 7% 미만)		25.61	0.09 (33cl)
맥주(알콜도수 1%당)		13.26	0.18 (33cl)
와인	일반	172.17	1.29 (75cl)
	발포성 와인 (알콜도수 8.5% 이상)	220.54	1.65 (75cl)
	중간재(port, sherry)	229.55	1.72 (75cl)
증류주(알콜도수 1%당)		19.56	0.30 (27.5cl@5.5%)
리큐르, 증류주(알콜도수 1%당)		n.a	5.48 (70cl@40%)

자료: the wine and spirit trade association—duty rates, 2006.5

### 3) 영국의 주류행정

영국은 전통적으로 주류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주류에 대해서는 주류면허법뿐만 아니라 주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척도법에 의해 주류병의 중량과 크기를 규제하고 주점에서 판매하는 생맥주의 용기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주류제조장에서 세무공무원을 상주시키거나 수시 입회검사를 통해 주세의 탈세를 예방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국가 본래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up>26)</sup>. 그밖에도 주류 소비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26) 서희열(2004)

영국의 주류면허제도(licensing regime)는 알콜 소매(alcohol retailing)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면허제도는 잉글랜드와 웨일즈(England and 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에서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현재 면허법 2003(Licensing Act 2003)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는 면허법 2005(Licensing Act 2005)의 적용을 2009년도부터 적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현재 면허명령 1996(Licensing Order 1996)을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에 개정할 예정이다.

가) 주류의 제조제도<sup>27)</sup>

영국의 국세청은 관세 및 소비세의 감독위원회에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주류 제조에 관한 규정, 주세 확보와 징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주류의 반출에 관한 규정 등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주 제조면허는 사업용 제조면허와 제한면허로 구분하고 제한면허는 양조 면허자의 가정용 혹은 농장 노동자 소비용으로만 맥주를 양조하는 경우 또는 감독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특별히 부여한다.

〈표 Ⅲ-12〉 제조면허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세법(Alcoholic Liquor Duties Act)을 통하여 주류 제조면허 및 주세 부과와 징수 사항규정</li> <li>- 특히 감독위원회에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주류 제조에 관한 규정, 주세 확보와 징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주류의 반출에 관한 규정 등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음.</li> </ul>
맥주 제조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용 제조면허와 제한면허로 구분</li> <li>- 제한면허는 양조 면허자의 가정용 혹은 농장 노동자 소비용 맥주를 양조하는 경우 또는 감독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특별히 부여함.</li> </ul>
포도주 제조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 제조면허를 소지하여야 함.</li> <li>- 단 보세창고 내에서 포도주 기포를 생성하여 포도주를 생산하는 자는 예외.</li> </ul>
증류주 제조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류주를 제조할 수 없음.</li> <li>- 증류업 면허는 발부된 후 매년 9월 30일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됨.</li> <li>- 제조, 증류업자는 포도주, 맥주 등 발효주 도·소매상과는 직접 거래할 수 없음.</li> </ul>

27) KREI · 농수산물유통공사, 「외국의 농가 및 소규모 주류생산 지원제도와 시사점」,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4.12에서 발췌하여 수정.

### (1) 제조방법기준

감독위원회에 제반 주류에 대한 제조방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위스키 등과 같은 증류주에 대한 물 섞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2) 제조시설기준

발효주 제조시설은 신고사항이며 증류주 제조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면허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류기 중 가장 큰 증류기의 용량이 400갤런(약 1.5kl) 이하이면 면허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전한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감독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 (3) 규격기준

주세의 효율적 부과를 기준으로 주류제조 규격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포도주는 포도 또는 포도즙을 알콜발효하여 만든 술을 증류주로 강화하거나 향기 성분을 첨가한 것 포함하며 사과주는 알콜분 8.7% 이하로 사과 또는 배(배술 : Perry 포함)를 발효하여 얻어진 술을 의미한다. 맥주는 맥주의 상품명으로 혹은 맥주의 대용품으로 생산되거나 혹은 판매되는 모든 주류를 포함하며 무작위 샘플 분석 결과 알콜도수 2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포함한다.

〈표 III-13〉 주류제조 규격기준

일반규정	- 주세 부과 기준으로 주류 기준을 설정
포도주	- 포도 또는 포도즙을 알콜발효하여 만든 술 단, 증류주로 강화하거나 향기성분을 첨가한 것 포함.
사과주	- 알콜분 8.7% 이하로 사과 또는 배 주스 (배술 : Perry 포함)를 발효하여 얻어진 술.
맥주	- 맥주의 상품명으로 혹은 맥주의 대용품으로 생산되거나 혹은 판매되는 모든 주류를 포함 - 무작위 샘플 분석 결과 알콜도수 2도를 초과하는 주류 포함. - 발효전 맥아즙의 비중이 1,200도 혹은 그 이상인 흑맥주나 무작위 표본 분석시 비중이 1,016도를 초과하지 않고 알콜도수 2도를 넘지 않는 주류 제외.

#### (4) 기타기준

주세법에서는 주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병입된 주류의 알콜도수와 병입 용량을 그리고 관세 및 간접세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료 및 완제품의 원산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적 상표기준은 농, 어업 및 식품성 표준국이 정하는 식품상표 기재기준 (Food Labelling Regulations)을 동시에 적용한다.

#### 나) 영국의 판매면허

##### (1) 개요

면허법 2003(the Licensing Act 2003)은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적용하는 의회법률이다. 이 법은 알콜의 공급, 규제되는 파티의 공급, 야간 간이음식점 공급에 대해 적용하는 면허법인데, 런던 바러(London boroughs), 메트로폴리탄 바러 (Metropolitan boroughs), 연합자치단체(unitary authorities) 및 디스티릭트 카운실(district councils)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사법권(the Justices of the Peace)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러한 지방자치 단체들은 이 법에 의하여 준사법적 권한(a quasi-judicial capacity)을 위임받은 면허위원회(Licensing Committee)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면허법 2003은 2005년 11월 23일 수요일 오후부터 적용되었다.

##### (2) 면허법 2003의 주요내용

###### (가) 유연한 판매시간

면허법 2003(Licensing Act 2003)에서는 24시간 동안 판매할 수 있고, 일주일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점포면허의 유연한 판매시간이 이용가능하다. 이러한 새로운 타입의 면허는 면허대상과 관련해서 권한의 범위에 대한 전문의견과 사업, 지역거주자의 영향에 대한 고려대상이 된다. 이 유연한 판매시간은 폭음문화(a binge-drinking culture)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마찬가지로 저녁 11시에 거리의 술취한 사람들을 내쫓기 위한 기준 폐점시간(standard closing times)으로 공공방해(public disorder)를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다.

## (나) 단일점포면허

단일점포면허는 각 규정의 단순화와 공무원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알콜, 공공 엔터테인먼트(public entertainment), 영화, 극장, 야간간이점포(late night refreshment houses), 야간카페(night cafe)의 6종류의 점포면허를 통합한 것이다.

## (다) 면허위원회(Licensing Committee)

각 지방자치단체는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된 면허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 개의 하부 위원회의 대다수의 위원들이 동의한 결정을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다른 의견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제안서들은 공무원(officers)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또한, 전체 위원회는 보고서의 감시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다른 카운실(council) 위원회의 많은 요건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결정은 인권권리법 1998(Human Rights Act 1998)과 관습(natural justice)의 원칙에 부합하여 내리게 된다.

## (라) 면허목적

이 법(Act 2003)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래의 네 가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1. 범죄와 폐해의 예방
2. 공공 안전
3. 공공 방해의 방지
4.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

## (마) 면허활동

이 법은 ‘면허활동(Licensable activities)’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1. 알콜의 소매판매
2. 클럽에서 알콜의 공급
3. 야간점포(late night refreshment)의 요건
4. 규제엔터테인먼트(regulated entertainment)의 요건

다시 규제엔터테인먼트(regulated entertainment)의 정의는 대중 앞에서 다음 공연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극 공연
2. 영화 상영
3. 실내스포츠행사
4. 복싱 또는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실내와 실외 포함)
5. 라이브뮤직의 공연
6. 레코드뮤직의 모든 활동
7. 춤공연

야간점포(late night refreshment)는 저녁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점포에서 공공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뜨거운 음식 또는 술을 공급하는 점포를 말한다.

(바) 점포면허(Premises licences)

점포면허는 면허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점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이다. 예전의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했지만, 점포면허는 한 번 면허를 발급받으면 사업기간 동안 유효하다. 점포면허의 적용은 사업운영에 대한 조건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요건은 모든 면허의 주요한 요건이 된다. 또한 다른 일반적인 세부조건과 점포의 단계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알콜의 판매에 대한 면허를 포함하는 점포면허는 신청을 승인받은 인적면허(personal licences)를 가지고 있는 관리인이 구상한 점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청서의 복사본을 면허승인기관(licensing authority; the council), 경찰서, 소방서, 건강및안전증진기관(the health and safety enforcement agency), 환경건강(Environmental Health ; 대부분의 경우), 미성년자보호위원회(the Child Protection Committee), 계획기관(the planning authority) 및 중량, 측정 그리고 거래기준기관(the weights and measures/ trading standards authority)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위의 모든 관계자들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면허기관(the licensing authority)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에 심리할 수 있다.

심리 후에 면허기관이 다섯 가지의 판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운영 스케줄과 일치하는 조건으로 면허 부여, 둘째, 신청서에 있는 몇 가지 면허행위를 배제, 셋째, 관리인이 구상한 점포로서 특별한 사람에게 승인하는 것을 거절, 넷째, 다른 활동을 위해 점포의 다른 부분을 승인, 다섯째, 전체적으로 승인을 거부. 승인받지 못한 신청은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면허부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승인받지 못한 제3의 관계당사자(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카운실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사) 인적면허(Personal licences)

인적면허는 점포면허의 권한아래 알콜판매의 위임 및 알콜을 판매를 하는 사람에게 허용해주는 면허이다. 모든 사람은 거주지역에서 인적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를 신청한 사람은 범죄기록과 관련 있는 위반사항이 깨끗해야 하고, 면허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면허는 10년 동안 지속되고, 면허만료시에는 거주지역의 권한기관보다 원래 면허를 신청했던 권한기관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미 이전의 면허(술집면허 등)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요건을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그랜드파더 권리(grandfather right)라고 한다. 만약, 신청자가 지역 권한기관의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모든 권한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아) 일시적인 행사통보(temporary event notices)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지역 권한기관과 지역 경찰에게 점포면허가 필요한 일시적인 행사를 통보해야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행사의 최장시간은 96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고, 행사 참여인원이 499명 이하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행사통보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 최소한 10일 전에 해야 한다. 인적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1년에 5번의 일시적인 행사를 할 수 있고, 인적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번의 일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시적인 행사는 같은 점포에서 1년에 12번만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다. 단지 지역 권한기관과 경찰에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자) 미성년자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면허법이 기존의 면허법에 비해 조금 바뀌었는데, 슈퍼마켓에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인적면허에 포함되는데, 성인과 동행하거나 특별하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라. 일본

1) 주류생산 및 주류정책의 연혁<sup>28)</sup>

일본의 경우 본격적인 양조산업이 등장한 것은 1860년대에 미국인 Spring Valley Breyer가 맥주 양조장을 설립한 때이다. 이 맥주는 주로 외국에 판매되었고, 일본 국내 소비는 소자부로 시부야라는 일본인이 1872년 대규모 맥주공장을 건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본의 양조업은 1880년대에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1901년 맥주에 대한 주세부과 및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양조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일본의 주류정책은 일본 전통주와 외래주에 대한 제조와 판매에 대한 면허제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주세 세수 확보와 주류품질 향상을 통한 주류산업 육성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은 주세법에 근거하여 주류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국세청이 주류산업정책과 관련된 면허권과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

28) 서현수(2004)의 p. 228를 요약·정리한 것임.

## 2) 일본의 주류과세체계

최근 일본의 주세제도를 살펴보면, 2005년 이전에는 주세에 관하여 원료·제조법에 따라 상세하게 주류를 분류하고 그 분류마다 다른 세율을 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세제개편을 통해 주류 간의 세율격차를 축소하고 주류의 분류 간소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 가) 주류분류

2006년 5월 1일(일부 4월 1일 시행) 개정된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종류는 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및 혼성주류의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포성 주류 : 맥주, 발포주 및 기타 발포성 주류(알콜도수 10% 미만)
- 양조주류 : 청주, 과일주 및 기타의 양조주
- 증류주류 : 연속식 증류소주, 단식 증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스피릿 및 원료용 알콜
- 혼성주류 : 합성청주, 미림, 감미과실주, 리큐르, 분말주 및 잡주

### 나) 품목, 정의 등의 개정

개정 전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10종류 11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의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17품목으로 구분하였다. 주류종류는 과세상의 분류이고 품목은 주류의 구분으로서 1개의 주류가 2개의 기준으로 정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Ⅲ-14>와 같다. 한편 품목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류의 제조시에 행하는 것으로 하여 알콜도수 등에 제한이 있는 주류(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시에 이러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조해야 된다.

〈표 III-14〉 주류 종류·품목과 그 정의 및 개정내용

구주세법		신주세법	정의 및 개정내용
종류	품목	품목	
청주		청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콜도수가 22% 이상의 것을 제외</li> <li>쌀, 쌀국, 물 및 청주박 이외의 물품중량의 합계가 쌀(쌀국포함)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li> <li>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 “보리, 조, 옥수수, 고량, 수수, 피 혹은 전분 또는 이들 국”을 제외</li> </ul>
합성청주		합성청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콜도수가 16% 미만, 엑기스가 5% 이상으로 산도가 일정 이상의 것” 이외를 제외</li> <li>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 “보리, 조, 옥수수, 고량, 수수, 피 혹은 전분 또는 이들 국”을 제외</li> </ul>
소주	소주갑류	연속식 증류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칭을 변경</li> </ul>
	소주을류	단식 증류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칭을 변경</li> <li>원료마다의 규정을 명칭화</li> </ul>
미림		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콜도수가 15% 미만, 엑기스가 40% 이상으로 원료 포도당 등의 중량이 일정 이하의 것” 이외를 제외</li> </ul>
맥주		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콜도수가 20% 이상의 것을 제외</li> </ul>
과실주류	과실주	과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실 또는 과실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에 대해서는 알콜도수가 20% 이상의 것을 제외</li> <li>주류의 원료로 된 과실에 함유하는 당류의 중량을 초과하여 당류를 가하는 것을 제외</li> <li>주류의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당류를 가한 것을 제외</li> </ul>
	감미과실주	감미과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실주로 되지 않는 것과 된 주류의 일부를 추가</li> </ul>
위스키류	위스키	위스키	
	브랜디	브랜디	
스피릿츠류	스피릿츠	스피릿츠	
	원료용알콜	원료용알콜	
리큐르		리큐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칭을 변경</li> </ul>
잡주	발포주	발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콜도수가 20% 이상의 것을 제외</li> </ul>
	분말주	분말주	
	기타잡주	기타양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전 주세법 규정에 의한 잡주(기타 잡주)의 일부 주류에 대해 품목을 신설</li> <li>“알콜도수가 20% 미만, 엑기스가 2% 이상의 것” 이외의 것을 제외</li> <li>알콜 이외의 주류를 원료의 일부로 한 것을 제외</li> <li>알콜을 원료의 일부로 한 것으로 알콜도수 15% 이상의 것 또는 알콜의 중량이 물 이외의 원료의 100분의 30 이상의 것을 제외</li> </ul>
		잡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상의 주류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신설)</li> </ul>

자료: <http://www.nta.go.jp>

## 다) 주세율

일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네 종류의 주류에 대해서 두 가지 세율체계를 적용하는데, 별도의 규정에는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별도의 규정에 속하지 않으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III-15〉 일본의 주류에 대한 세율

(단위: kℓ)

분 류	기본세율	특별세율
발포성주류	220,000엔	기타발포성주류 : 80,000엔
		맥아비율 25% 미만 : 134,250엔
		맥아비율 25% 이상 ~ 50% 미만 : 178,125엔
양조주류	140,000엔	과실주 : 80,000엔
		청주 : 120,000엔
증류주류	알콜도수 21% 미만 : 200,000엔	알콜도수 37% 미만 : 특별세율 적용
		- 위스키 : 370,000엔
	알콜도수 21% 이상 : 200,000엔+알콜도수 1%당 10,000엔	- 브랜디 : 370,000엔
		- 스피릿츠 : 370,000엔
혼성주류	알콜도수 21% 미만 : 220,000엔	알콜도수 37% 이상 : 기본세율 적용
		미립 및 잡주(미립유사) : 20,000엔
	알콜도수 21% 이상 : 200,000엔+알콜도수 1%당 11,000엔	감미과실주 및 리큐르(알콜도수 13% 미만) : 120,000엔
		감미과실주 및 리큐르(알콜도수 13% 이상) : 120,000엔+알콜도수 1%당 10,000엔
		분말주 : 390,000엔

자료: <http://www.nta.go.jp>

### 3) 일본의 주류행정

#### 가) 개요

1949년 일본 국세청이 발족된 후 1953년 2월에 현행 ‘주세법’과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주류관련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의 주류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12월에는 미성년자 음주금지 관련조항 추가, 2003년 4월에 주류 등의 검정제도의 폐지, 7월에는 한시적 입법으로 주류소매업자의 경영개선 등에 관한 긴급조치법 제정, 9월에는 소매업면허의 규제 완화, 주류제품의 표시기준 정비, 주류판매관리자의 선임 신설 등의 제도 변화가 있었다.

2004년 12월 이전에는 주세에 관하여 원료·제조법 등에 따라 상세하게 주류를 분류하고 그 분류마다 다른 세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주세제도하에서 기술개발의 진전에 따라 세부담을 낮게 부담하는 주류상품이 다수 출현하였다. 따라서 2004년 12월에 주류 간의 세율격차를 축소하고 주류의 분류 간소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주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하였다.

〈표 III-16〉 일본의 주세법의 연혁

연 도	내 용
2000년 12월	주세법의 일부 개정(주류판매면허의 취소이유에 “주류판매업자가 미성년자 음주금지법의 규정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추가)
2003년 4월	주세법의 일부 개정(주류 등의 검정제도의 폐지 등)
2003년 7월	주류소매업자의 경영개선 등에 관한 긴급조치법의 제정(긴급조정지역의 주류소매업면허 부여 등의 제한, 조치청구, 주류소매업자의 경영개선 및 전폐업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한시적 입법
2003년 9월	주세법 및 주류업조합법의 일부개정(소매업면허의 규제완화, 면허의 거부요건 추가, 주류의 표시에 관한 명령규정 정비, 주류판매관리자의 선임규정 신설)
2004년 12월	주류를 재분류하고, 제조면허제도 등의 개정

## 나) 구체적인 내용

### (1) 제조면허제도

신규 주류제조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와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의 위치, 제조 및 저장의 설비, 제조의 개시 및 중지, 제조 예상수량 및 제조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매월분의 주류 제성 및 출고수량, 매월 말의 주류 소지수량 및 월 중에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예전의 주류 제조면허는 하나의 제조장에 있어서 제조면허를 받은 후 1년 동안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제조 예정수량이 일정수량(이하 최저 제조 예정수량이라고 한다)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2006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청주 또는 증류주(연속식 증류소주, 단식 증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원료용알콜 또는 스피릿츠)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장에 있어서 자기가 제조한 청주 또는 증류주를 원료로 하여 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큐르의 최저 제조 수량기준(6kl)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 (2) 판매면허제도

주류 판매업 면허란 주류의 판매를 할 수 있는 면허이며, 도매업 면허와 소매업 판매면허가 있다. 주류 판매업자나 주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면허를 말한다.

〈표 III-17〉 주류도매업 면허

종 류	사 업 범 위
일반주류도매업면허	전 주류를 도매할 수 있는 면허
맥주도매업면허	맥주만 도매할 수 있는 면허
양주도매업면허	와인,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등 도매할 수 있는 면허
특수주류도매업면허	주류 제조자의 본지점, 출장소에 대한 면허, 주류 제조자의 기업합병에 수반하는 면허, 주류 제조자의 공동 판매기관에 대한 면허, 기한부 도매업 면허
주류수출입도매면허	수출되는 주류와 수입되는 주류 도매할 수 있는 면허

자료: <http://ja.wikipedia.org>

〈표 III-18〉 주류소매업 면허

종 류	사 업 범 위
일반주류소매업면허	모든 품목의 주류를 소매 <sup>1)</sup> 할 수 있는 면허
통신판매주류소매업면허	도도부현 이상의 광범위한 지역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통신 판매에 의해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 면허. 다만, 판매할 수 있는 주류는 국산주의 경우 토산술 등 작은 제조장에서 제조된 것과 수입주에 한함.

주: 1) 통신판매 제외.  
 자료: <http://ja.wikipedia.org>

(3) 주류표시사항 등 개선

주류제조업자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주류, 주류판매업자가 보세지역으로부터 반입하는 주류, 주류판매업자가 재반입하여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그 용기 또는 포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일정한 표시사항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류의 종류(또는 품목) 표시를 폐지하고 주류의 품목을 표시
- 분말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 알콜 함량을 표시
- 발포주 및 잡주에 대해서는 세율적용 구분을 표시
- 기타 발포성 주류에 대해서는 발포성을 갖는 취지 및 세율적용 구분을 표시

##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OECD회원국들의 주류과세체계를 조사하였고,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OECD 주요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의 주세제도와 주류행정체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주류에 대하여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증류주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과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국세청이 주세와 주된 주류행정을 모두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세청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담당 부서를 운영중이고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주세 관리와 제조 및 판매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반적인 주류행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부처가 분산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는 소수의 정부부처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OECD 주요국은 주류의 오남용방지 및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 요일과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 나라의 주류에 대한 소비행태는 그 나라의 주류정책에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류정책의 핵심은 주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징세 편향적인 주류정책으로 인해 주류의 제조, 판매·유통 등 주류행정의 핵심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sup>29)</sup>. 이로 인하여 주류의 밀조·밀매 방지 등 탈세 방지를 위한 규제 위주의 정책에 주류행정의 초점을 두었고, 주류의 오남용에 따

29) 주류행정에 관계된 정부부처 및 소관업무를 간략히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류에 관한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주류공정거래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류원료수급 차원에서 양곡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수산부, 음주단속 등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산업인력을 담당하는 노동부, 음주관련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건전음주문화권장사업 등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여성음주 예방에 관여하는 여성가족부, 군인의 음주문제에 관한 국방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주류행정 및 규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른 외부불경제효과 교정 및 주류산업 육성 등을 간과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류와 관련된 여러 행정·규제 업무가 다양한 소관부처별로 분산된 주류 행정체계와 주류행정의 주관부처가 국세청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안을 국세청에 일임하는 업무관행으로 주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나 규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서현수, 2004).

특히 최근에는 주세수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짐에 따라 세수확보 측면보다는 주류의 오남용에 따른 외부불경제효과 교정이 보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류 관리 및 규제체계를 개선 하자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주류행정을 전담할 독자적인 기구의 설립을 통하여 주류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류행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래의 <표 IV-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을 제외한 OECD 주요국의 주류행정체계의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V-1> 주요국의 행정기관의 비교

구분	주류제조관리기관	주류판매관리기관	세수확보	기타 규제기관 <sup>1)</sup>
미국 <sup>2)</sup>	알콜, 담배에 대한 과세 및 거래국(TTB)			알콜, 담배에 대한 과세 및 거래국(TTB)과 알콜, 담배, 총기 및 폭발물관리국(ATF) <sup>3)</sup>
캐나다 <sup>4)</sup>	각 주의 주류위원회	각 주의 주류관리청 <sup>5)</sup>	국세청	각 주의 주류위원회
영국	국세 및 관세청(HMRC)	면허관리위원회	국세 및 관세청(HMRC)	면허관리위원회
일본	국세청			각 부처 <sup>6)</sup>
우리나라	국세청			각 부처

주: 1) 미성년음주연령, 광고규제, 판매시간 등의 규제를 말한다.

2)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각 단계에서 주류의 제조 및 판매를 관리하고, 과세할 수 있다.

3) ATF는 주류와 관련된 밀수 등의 범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주별로 주류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한다.

5) 전매청으로 우리나라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6) 미성년음주연령 등에 대한 규제는 감찰청 및 후생노동성, 주류의 생산, 공급 및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는 국세청 산하의 주류심의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광고 등의 규제는 주류조합의 자체적인 규정이 있고 주류중재위원회에서 집행되고 있다.

출처: 미국 [www.ttb.gov](http://www.ttb.gov), 캐나다 [www.agco.on.ca](http://www.agco.on.ca), 영국 [www.hmrc.gov](http://www.hmrc.gov), 일본 [www.e-gov.go.jp](http://www.e-gov.go.jp).

한편 주류에 대하여 종가세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국가처럼 종량세로 과세할 것인지는 과세방식의 일반적인 장단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주세정책 목표에 보다 적합한 방식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 IV-2>와 같이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단점을 정리한 장근호(2005)에 따르면, 종가세의 경우 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종 간의 상대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알콜도수에 따른 과세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고 한다. 반면에 종량세는 고도주-고세율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고도주이지만 저가인 주류 제품에 대해서는 중과세로 제품의 고급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종 간 상대가격이 바뀔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세율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세부담이 감소하여 외부불경제의 교정과 세수확보가 어려운 단점도 존재한다.

<표 IV-2> 종가세와 종량세의 특성과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종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담이 제품가격(품질)에 비례: 세수가 물가상승에 비례</li> <li>• 수직적 형평성에 기여</li> <li>• 제품 간의 상대가격 일정하게 유지</li> <li>• 과세표준 방식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과세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특성에 따른 과세가 불리</li> <li>• 저가품(덤핑제품)이 유리: 제품 고급화에 장애</li> <li>• 가격조작 가능성</li> <li>• 가격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환율과 국제가격에 민감</li> </ul>
종량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특성(알콜도수)에 따른 과세</li> <li>• 과세행정이 간편</li> <li>• 탄력운용시 일정 세수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가격의 변화를 초래</li> <li>• 고가품이 유리</li> <li>• 경직 운용시 실질세수 감소</li> <li>• 수입품에 비차별적</li> </ul>

자료: 장근호,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2005.

따라서 최근 주류행정의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주류소비의 외부불경제효과의 교정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경우 종가세보다는 알콜도수에 직접적으로 과세하며,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탄력적인 종량세가 일견 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종량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소주산업의 경쟁력 상실, 주종 간 심각한 가격왜곡을 통한 세부담 역진성 강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고 과도한

주류소비에 따른 외부불경제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곽태원(2004)의 주장처럼 현행  
증가세의 체계를 유지하지만 주세율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이때 고도주의 세율이  
저도주의 세율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곽태원, 「우리나라 주세 정책의 개편방향」, 계간 『세무사』, 2004년 여름호, 2004.
- 서현수, 「한국주류정책의 평가와 혁신전략」, 『경영과 회계』, 2004.
- 서희열,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세무학연구』 제17호, 2001.
- 김창호, 「농산물 주정생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성명재 · 장근호, 『WTO 조세분쟁과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성명재, 『주류 유통 · 판매 관련 규제정책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성명재 · 권오성 · 장근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장근호,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5.
- KREI · 농수산물유통공사, 「외국의 농가 및 소규모 주류생산 지원제도와 시사점」, 『우리 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4.
- 이창환, 「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법정논총』 제37권 통권 제51집, 2002.
- 임완혁, 「일본의 주류시장 동향」, 『주류산업』 2005년 가을호, 2005.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 『국세청 40년사』, 2006.
- 재정부, 『조세개요』, 2006.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6.
- Canada Revenue Agency, *Excise Duty Notice*, 2006.

IAS, *Alcohol; Tax, Price and Public Health*, 2006.

CCH, *U.S. Master Excise Tax Guide*, 5th, 2005.

the wine and spirit trade association – duty rates, 2006.

<http://www.brewers.or.jp>

<http://www.abc.ca.gov>

<http://www.ttb.gov/beer/qualify.shtml>

<http://www.boe.ca.gov/>

<http://www.agco.on.ca/en/b.alcohol/b1.types.html>

[http://en.wikipedia.org/wiki/Alcohol\\_and\\_Tobacco\\_Tax\\_and\\_Trade\\_Bureau](http://en.wikipedia.org/wiki/Alcohol_and_Tobacco_Tax_and_Trade_Bureau)

<http://ja.wikipedia.org>

<http://www.nta.go.jp>

[http://en.wikipedia.org/wiki/Liquor\\_Control\\_Board\\_of\\_Ontario](http://en.wikipedia.org/wiki/Liquor_Control_Board_of_Ontario)

## 부 록

## 1. 주류제조 시설기준

〈부표 X-1〉 주류제조 일반적 기준

주류별	시 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탁주· 약주 및 청주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나) 술덧탑 (다) 정제탑  (2) 시험시설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현미경 (다) 향온향습기 (라) 간이증류기 (마) 스펙트로포토메타	550kl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대 1,000배 이상 1대 0~65℃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1대
나. 탁주 및 약주	(1) 담금 및 제성시설 (가) 용기재질  (나) 용기 총중량 1) 밑술조 2) 발효조 3) 제성조  (2) 부대시설 (가) 증자기(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나) 수동 또는 반자동주입기 및 타전기 (다) 여과기(약주에 한함)  (3)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알루미늄탱크·스텐레스탱크·범 량탱크·도자기류 또는 용기류  60ℓ 이상 6,000ℓ 이상 7,200ℓ 이상  1대 1대 다단식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것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0.2도 눈금 0~30도 1조

## 〈부표 X-1〉의 계속

주류별	시 설 구 분	시 설 기 준
다. 증류식 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무균상자 (마) 스펙트로포토메타	15kl 이상 4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1대 1대
라. 맥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당화부(담금조) 2) 당화조 3) 여과조 4) 맥즙부(자비조) 5) 침전조 6) 전발효조 7) 후발효조(저장조)  (2) 시험시설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가스압측정기 (바) 간이증류기 (사) 스펙트로포토메타	40kl 이상 40kl 이상 60kl 이상 85kl 이상 50kl 이상 1,850kl 이상 6,000kl 이상  1대 1대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1대
마. 과실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스펙트로포토메타	42kl 이상 4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1대

## 〈부표 X-1〉의 계속

주류별	시 설 구 분	시 설 기 준
바. 희석식 소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주정저장조 총용량 (나) 희석조 및 검정조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마) 스펙트로포토메타	100kl 이상 260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1대 1대
사. 증류식 소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증류기  (3)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마) 스펙트로포토메타	12kl 이상 50kl 이상  1.0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1대 1대
아. 위스키	(1) 담금·저장·제성용기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2) 증류기(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3)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마) 스펙트로포토메타	7kl 이상 200kl 이상 50kl 이상  1.7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1대 1대

## 〈부표 X-1〉의 계속

주류별	시 설 구 분	시 설 기 준
자. 브랜디	(1) 담금·저장·제성용기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120kl 이상 85kl 이상 50kl 이상
	(2) 증류기(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1.5kl 이상
	(3)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스펙트로포토메타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1대
차. 일반 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담금·저장·제성용기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침출, 제성조총용량	155kl 이상 50kl 이상
	(2) 증류기(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0.7kl 이상
	(3)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스펙트로포토메타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1대

자료: 주세법 제5조 제1항관련 【별표】

## 〈부표 X-2〉 특정주류업

주류별	시 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탁주·약주 및 청주	(1) 국실 및 담금실 (2) 담금 및 제성시설 (가) 용기재질 (3)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가) 국실 : 6㎡ 이상 (나) 담금실 : 10㎡ 이상 알루미늄탱크·스텐레스탱크·법랑탱크·도자기류 또는 용기류 1대 0.2도 눈금 0~30도 1조
나. 과실주	(1) 건물 (2) 담금·제성·저장용기 (3) 부대시설 (4)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가) 원료처리실 : 6㎡ 이상 (나) 담금실 : 20㎡ 이상 (밀술실·제성실·저장실포함) 스텐레스탱크·법랑탱크·도자기류 또는 용기류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0.2℃ 1개 0.2도 눈금 0~100도 1조 1대
다. 일반 증류주·리큐르 및 기타주류	(1) 건물 (2)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담금실 : 25㎡ 이상(원료처리실·침출실·발효실·저장실·제성실포함) (나) 증류실 : 8㎡ 이상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스텐레스탱크·법랑탱크·도자기류 또는 용기류

## 〈부표 X-2〉의 계속

주류별	시 설 구 분	시 설 기 준
다. 일반 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3) 부대시설  (4)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0.2℃ 1개 0.2도 눈금 0~100도 1조 1대
라. 일반증류 주 및 기 타주류	(1) 건물  (2) 담금·제성·저장용기  (3) 부대시설  (4)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가) 담금실 : 50㎡ 이상(원료처리 실·침출실·발효실·저장 실·제성실포함) (나) 증류실 : 15㎡이상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스텐레스탱크·법랑탱크·도자기 류 또는 옹기류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0.2℃ 1개 0.2도 눈금 0~100도 1조 1대

자료: 주세법 제5조 제1항관련 【별표】

〈부표 X-3〉 전통주류업

적용대상	시 설 구 분	시 설 기 준
	(1) 국실 · 담금실 · 증류실	(가) 국실 : 6㎡ 이상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나) 담금실 : 10㎡ 이상 (밑술실 · 제성실 · 저장실포함) (다) 증류실 : 8㎡ 이상 (발효주류 제외)
	(2) 국실의 구조	벽과 출입문 : 2중문으로 단열재 사용
	(3) 담금 · 제성 · 저장용기	스텐레스탱크 · 법랑탱크 · 도자기류 또는 옹기류
	(4)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나) 증류시설 (발효주류 제외) (다) 세척장 또는 세병장 시설 (라) 병입 또는 세병장 시설
	(5)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0.2℃ 1개 0.2도 눈금 0~100도 1조 1대

자료: 주세법 제5조 제1항관련 【별표】

〈부표 X-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적용대상	시 설 구 분	시 설 기 준
	(1) 담금 및 제성시설	(가) 담금(당화 · 여과 · 자비 등)조 : 0.5kl~2.5kl (나) 발효 및 저장조 : 5kl~25kl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1대 0.2도 눈금 0~30도 1조
	(3) 기타시설	유량계

자료: 주세법 제5조 제1항관련 【별표】

## 2. 주류판매면허제도 연혁

〈부표 X-5〉 주류 판매면허제도 변천과정

일 자	내 용
'76. 7 이전	○ 일반도매업면허 자율화 - 영세도매업자 난립으로 주류유통질서 문란 - 무자료 위장거래 성행 및 세수일실 초래
'76. 7	○ 일반주류도매업 통합 - 주류유통과정 정상화·주류유통산업 발전도모 - 개인 2,071명 → 법인 393명으로 통합
'77. 1	○ 양주도매면허 부여 - 면허원칙 : 양주제조사별 계열판매 실시
'81. 12	○ 일반주류도매업면허 증설(303 → 604) - 주류수급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단위 2개소이상 되도록 증설 (종전에는 시·군단위 1개소) ○ 양주도매업면허 자율화
'87. 2	○ 양주도매면허의 통합(개인 295 → 법인 136) - 일반주류도매업면허 604개, 양주도매업 136개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704개로 일원화함 - 1개 도매장이 일반주류와 양주류를 혼합판매 허용 ○ 도매면허 완전개방 - 정부의 산업별 경제행정규제 완화의 일환
'91. 1	○ 주류도매면허 일원화(종합주류도매업면허제도 신설) - 일반주류도매업면허 604개, 양주도매업 136개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740개로 일원화함 - 1개 도매장이 일반주류와 양주류를 혼합판매 허용 ○ 도매면허 완전개방 - 정부의 산업별 경제행정규제 완화의 일환
'97. 2	○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시·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 - 완전개방으로 인한 부도업체 속출 및 무자료거래 발생
'98. 12	○ 정부의 규제개혁조치에 따라 주종별·판매자별로 11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도매업면허를 5종으로 통폐합(종합주류도매업면허,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주정도매업면허, 주류수출업면허, 주류중개업면허)
'99. 2	○ 주류수출업면허는 주류수출입업면허(가)로, 주류수입면허는 주류수출입업면허(나)로 분류

자료: 김정민, 「우리나라의 주류판매업 면허제도」, 『국세월보』, 2003. 11월호



세법연구 07-03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

2007년 11월 23일 인쇄

2007년 11월 29일 발행

저 자 박명호·문예영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61-8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